

제1970호 고양시보

2023년 4월 14일(금)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차 례

조 례

고양시 조례 제2646호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1
고양시 조례 제2647호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고양시 조례 제2648호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3
고양시 조례 제2649호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17
고양시 조례 제2650호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고양시 조례 제2651호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고양시 조례 제2652호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1
고양시 조례 제2653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34
고양시 조례 제2654호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38
고양시 조례 제2655호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고양시 조례 제2656호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2
고양시 조례 제2657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차 례

규 칙

고양시 규칙 제1159호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49
고양시 규칙 제1160호	고양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60
고양시 규칙 제1161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2

훈 령

고양시 훈령 제401호	고양시 법률자문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65
-----------------	-----------------------	----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23-1051호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8
고양시 공고 제2023-1053호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5
고양시 공고 제2023-1054호	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85
고양시 공고 제2023-1055호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1
고양시 공고 제2023-1056호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1
고양시 공고 제2023-1057호	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2
고양시 공고 제2023-1058호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8
고양시 공고 제2023-1063호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4
고양시 공고 제2023-1064호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146
고양시 공고 제2023-1065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7
고양시 공고 제2023-1067호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6

차 례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23-135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한양컨트리클럽)] 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91
고양시 고시 제2023-137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297호선 외 1개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	196
고양시 고시 제2023-139호	도로명주소 고시	201
고양시 고시 제2023-140호	고양 풍동2지구 3블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03

제2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4월 14일

고양시 조례 제2646호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종합계획은”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로,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수립하며, 제6조에 따른 고양시 지역지능정보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수립해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따라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을 “시장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지역지능정보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고양시 지역지능정보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지역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자문을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
2. 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점검
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정보의 공동활용 및 자원발굴 방안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기반구축의 기술분야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6(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정보화 교육 수강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수강생에게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

령」 제46조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의3(정보화 교육 수강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를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수강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1. 천재지변, 각종 재난상황의 발생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교육이 취소된 경우
2. 교육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3. 수강생 본인 의사로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 지역지능정보화 위원회의 위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정보통신담당관
입안자	과장 성명	정보통신담당관 김 윤 정
	팀장 성명	정보기획팀장 최 현 옥
	담당자 성명·전화	김 지 영 031-8075-2553

[별표 1]

정보화 교육 수강료 징수 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단 위	교 육 시 간	수 강 료
1인 1강좌	10시간 ~ 20시간	10,000원
	21시간 ~ 40시간	20,000원
※ 수강료 이외의 제반비용(교재비 등)은 수강생(수익자)부담 ※ 비고 :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수강료 감면대상(대상자는 증빙서류 제출 필요)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고령자, 결혼이민자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농어업인 3. 그 밖에 고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 2]

정보화 교육 수강료 반환 기준(제15조의3제1항 관련)

구분		반환 기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및 교육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환불
수강생 본인 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전액 환불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 비교 수강생 본인 의사로 취소하는 경우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한 날’을 반환 기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수강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	강좌명	() 반)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수 강 료	금 원 (₩)			
수강기간				
반 환 수 강 료	금 원 (₩)			
입금통장	거 래 은행		예 금 주 명	
	계좌 번호			
신청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며,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15조의3에 따라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 ○○○구청장 귀하				

고양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지능정보화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고, 정보화 교육에 대한 수강료 징수 및 반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지역지능정보화 위원회의 심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제4조 및 제5조).
- 나. 위원회의 기능에 자문 역할을 추가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함(제6조).
- 다.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자문이 끝나면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함(제6조).
- 라.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6조의2).
- 마. 정보화 교육의 수강료 징수 및 반환 기준을 신설하고 그에 따른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신설함(제15조의2, 제15조의3,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서식).

제2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4월 14일

고양시 조례 제2647호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내기업”이란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2. “기업 에스오에스(SOS: Speed One-stop Solution)”란 기업애로 해소를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 ” 시장 “ ” 을 “ “시장” ”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기업관련”을 “기업 관련”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시에 기업을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예비 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인력·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그

밖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중 “지식산업센터로로” 를 “지식산업센터로” 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대하여 소요되는” 을 “드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내·외” 를 “국내외” 로 한다.

제10조 중 “국내·외” 를 “국내외” 로 한다.

제11조 중 “채결하고자” 를 “채결하려고” 로, “노력하여야” 를 “노력해야” 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기업관련” 을 “기업 관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업간” 을 “기업 간” 으로, “기업관련” 을 “기업 관련”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선도업체로써” 를 “선도업체로서” 로, “기업간” 을 “기업 간” 으로, “기술전수” 를 “기술 전수” 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중 “행정 및 재정” 을 “행정적 및 재정적” 으로 한다.

제25조제5호 중 “기업간” 을 “기업 간” 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개폐” 를 “개정, 폐지” 로 한다.

제5장의 제목 “고양시 기업지원자문위원회” 를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 로 한다.

제29조 중 “자문” 을 “심의·자문” 으로 하고, “기업지원자문위원회” 를 “기업지원심의위원회” 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한다”를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11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 업무”를 “관련 업무”로,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같은 조 후단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5조의 제목 “(준용)”을 “(적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을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3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양시 기업지원자문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9조에 따른 고양시 기업지원자문위원회는 제29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로 본다.

-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1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고양시 기업지원자문위원회의 위원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고양시 기업지원자문위원회”를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로 한다.

소관부서		기업지원과
입 안 자	과 성 명	기업지원과장 김 동 원
	팀 성 명	기업SOS팀 최 정 원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승 주 031-8075-3569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기업지원자문위원회의 명칭을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구성 인원을 15명으로 상향함(제29조 및 제31조).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4월 14일

고양시 조례 제2648호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여성기업“이라 함은”을 ““여성기업”이란”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여성경제인“이라 함은”을 ““여성경제인”이란”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을 ““여성경제인단체”란”으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을 “해당하는지”로, “확인방법”을 “확인 방법”으로, “고시(여성기업 확인요령)”를 “고시 「여성기업 확인요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을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여성기업 자금지원의 경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상대방 선정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심의)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른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 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따라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른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기업지원과
입 안 자	과 성 명	기업지원과장 김 동 원
	팀 성 명	SOS팀장 최 정 원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은 영 031-8075-3566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그 기능과 목적 등이 유사한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정비함(제10조).
- 나. 고양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4월 14일

고양시 조례 제2649호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모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학교·법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책무를 진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고양시 환경교육계획(이하 “시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② 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현황
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4. 학교·사회환경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6. 환경교육을 위한 민간 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 체계 구축
7. 환경교육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8. 환경교육 계획의 이행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한다.

④ 시 계획은 제5조에 따라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환경교육에 관한 자문)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환경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교육 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5.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환경체험·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8.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단체 등에서의 사회환경교육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5.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 및 보급
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3.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에 필요한 연구, 조사 지원
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실시
5. 환경교육 협력 체계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사회단체,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7. 지역 환경을 이용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8.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③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다.

제9조(환경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경비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환경교육센터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어린이집·단체 등(이하 “기관·단체등”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예산을 지원받는 환경교육센터 및 기관·단체등은 예산편성기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매년 센터 운영비와 환경교육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④ 예산을 지원받는 환경교육센터 및 기관·단체등이 사업 예산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예산을 지원받은 환경교육센터 및 기관·단체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1조(환경교육 정보망 구축) 시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보급 등을 위하여 고양시 환경교육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료 요청) 시장은 환경교육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고양시 환경교육

위원회에 자문한 경우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양시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 위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환경정책과
입 안 자	과 성 장 명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팀 성 장 명	환경교육팀장 원은주
	담 당 자 성명·전화	문다빈 (031-8075-2830)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상위법인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제명을 「고양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함.
- 나.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다.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
- 라. 환경교육에 관하여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함(제5조).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4월 14일

고양시 조례 제2650호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태환경교육센터”란 생태, 환경 등 환경 전반의 교육 및 체험활동을 시민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환경교육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가. 하수처리장, 고양환경에너지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나. 고양어린이박물관, 키텍스캠핑장 등 체험시설
 - 다. 고양생태공원, 일산호수공원, 대덕생태공원 등 환경교육 체험 가능 시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명칭)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환경교육센터의 명칭은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생태·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생태·환경교육 시행 및 교재 교구의 개발·보급
3. 생태·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생태·환경교육 수요조사
5. 생태·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6.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행사의 추진
7.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자료의 수집, 보존, 전시
8.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교재의 제작 및 배포
9. 교육센터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관리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중 “ 「고양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받을”을 “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호 또는 제3호”를 “제3호 또는 제4호”로, “휴관하고자 할”을 “휴관하려고 하는”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교육센터 시설 안전점검이나 개선·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제1항 중 “사용승인신청서” 를 “사용승인 신청서” 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0호 중 “5.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을 “5. 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받고자” 를 “받으려고” 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1조” 를 “제20조” 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에 자문한 경우 「고양시 환경기본조례」 제22조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환경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환경정책과장 조영자
	팀장 성명	환경교육팀장 원은주
	담당자 성명·전화	문다빈 031-8075-2830

고양시 생태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고양시 환경교육위원회의 기능을 「고양시 환경기본 조례」에 따른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교육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고양시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함(제8조).
- 나. 교육센터 휴관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제9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4월 14일

고양시 조례 제2651호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브랜드 관광기념품심의위원회”를 “관광진흥위원회”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관광기념품에 관한 심의·자문) 시장은 관광기념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36조에 따른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거나 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관광기념품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판매 부진 상품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호 중 “전업(轉業)”을 “업종 전환”으로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에 위반되거나”를 “법을 위반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판매금지) 제10조에 따라 관광기념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상품의 생산자 또는 판매자는 제작·유통된 상품을 회수해야 하며 판매할 수 없다.

제13조제3항 중 “하고자”를 “하려고”로 한다.

제16조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 제36조에 따른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임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관광과
입 안 자	과 성 명	관광과장 김 동 원
	팀 성 명	관광개발팀장 반 예 경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진 경 031-8075-3407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고양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고양시 관광진흥위원회에 통합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고양시 브랜드 관광기념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함(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4월 14일

고양시 조례 제2652호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를 마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구의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 관내 종합병원 감염병 전문가
 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3. 감염병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질병관리과장 황 규 영
	팀 장 성 명	감염병관리팀장 이 미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예 은 031-8075-4661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감염병 관련 재난 및 응급의료 대응 준비 등 정책 자문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 하고자 개정함.

□ 주요내용

-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운영을 비상설로 운영함(제9조).
- 나.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제9조의2).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4월 14일

고양시 조례 제2653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시립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양시의 문화발전과 고양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 “시립도서관 “(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 를 “ “시립도서관” ” 으로, “뜻한다” 를 “말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도서관 자료 “(이하 “자료” 라 한다)” 를 “ “도서관 자료” ” 로,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써” 를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서관” 을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도서관자료” 를 “도서관 자료” 로 한다.

제5조 중 “「도서관법」 제27조”를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서관법」 제9조”를 “법 제4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이를”을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회원”에 한하여”를 “회원에게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예외를 허용한다”를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능시설”을 “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그 밖의”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용하고자”를 “사용하려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6호 중 “해할”을 “해칠”로 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행위 포함”을 “행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회”를 “두 차례”로 한다.

제23조의2제2항 중 “3년”을 각각 “5년”으로 한다.

제24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의3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3(운영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5조의4(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서관 운영 관련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별표 1의 삼송도서관란 다음에 높빛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높빛도서관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일로 34-8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덕양구도서관과장 최 경 숙
	팀 장 성 명	도서관정책팀장 이 준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진 근 숙 031-8075-9012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이유

- 신규 개관 예정인 높빛도서관을 도서관의 범위에 추가하고, 상위법에 맞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신규 개관 예정인 높빛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표시함(별표 1).
- 나. 상위법 「도서관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제1조, 제5조, 및 제8조).
- 다. 운영·관리의 위탁 기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맞춰 정비함(제23조의2).
- 라. 위원장의 직무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해 규정함(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 마.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2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4월 14일

고양시 조례 제2654호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생태하천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생태하천과장 이 동 희
	팀 장 성 명	생태하천팀장 최 금 자
	담 당 자 성명·전화	송 한 울 031-8075-2769

고양시 생태하천 살리기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 제안이유

- 고양시 생태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설치·구성하였으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유명무실하고 임의위원회로서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조례를 폐지함.

제2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4월 14일

고양시 조례 제2655호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후단 중 “3년” 을 “5년”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문화복지위원장

☐ 제안이유

○ 국공립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기간을 5년으로 함.

☐ 주요내용

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함(제20조).

제2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4월 14일

고양시 조례 제2656호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과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당연직 위원은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정민경 · 김미수 · 손동숙 의원(찬성의원: 조현숙 의원 등 8명)

□ 제안이유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봉사하는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의 구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정책수립 및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장을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 고양시 탄소중립 시민실천연대 업무 담당 국장을 선출하여 정책이행성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선출 기준을 명시함(제6조).
- 나.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의 운영 규정을 마련함(제8조).

제2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4월 14일

고양시 조례 제2657호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2.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기초생활 인프라를 운영·관리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의 제5호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연·전시·휴게·창업 등 주민의 문화·여가·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제1항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2.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등의 활동
3.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4.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5.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2. 「고양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사회적경제 조직 중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3. 주민협의체 및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4.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정한 대상별 감면 비율은 별표와 같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 ① 시장은 매년 1월 제19조제2항제2호와 제3호의 감면 대상 공동이용시설 운영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12월에 수행실적과 운영능력을 평가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를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매년 10월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비율 (제19조 관련)

감면 비율	감면 대상
100%	도시재생지원센터, 시장이 정한 사용료 감면 대상
50%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연차별 차등 감면	협동조합 등, 주민협의체,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1년차 ~ 3년차: 100% 4년차: 70% 5년차 이후: 50%
기타	1. 연차 적용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4년차부터 매년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감면 비율 조정 - 우수: 감면율 10% 상향 조정 - 미흡: 감면율 10% 하향 조정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안자:** 김해련 · 신현철 · 이영훈 의원(찬성의원: 최규진 의원 등 8명)

□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과 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여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제2조).
- 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종류를 추가함(제3조).
- 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과 감면 비율을 규정함(제19조 및 별표).
- 라. 공동이용시설 운영평가 방법을 규정함(제20조).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4월 14일

고양시 규칙 제1159호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체위원회 구성) ①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전체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분야별로 각각 공개 추첨하여 정한다.

④ 전체위원회의 간사는 주민참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위촉·해촉)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②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사항을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제4조(조사·연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이 제출하는 조사·연구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보고 등) ① 전체위원회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의 조사·연구 결과가 시 정책 및 계획 수립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부서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총괄부서와 주민참여사무국, 소관부서를 각각 설치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괄부서: 주민참여 업무 담당 부서로, 전체위원회 운영과 소관부서 지정 등의 업무 관장

2. 주민참여사무국: 전체위원회 활동 지원과 조례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가. 정기회의·임시회의의 안건, 회의록 작성·관리 등 보고자료 작성

나. 전체위원회 연간 운영 및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 계획 수립 지원

다. 토론회 등 청구의 접수 및 연명부의 적정성 여부 검토

라. 토론회 등 청구서의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게시

마. 토론회 등의 개최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

3. 소관부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가. 전체위원회 정기회의·임시회의의 안건, 회의록 작성·관리 등 보고자료 작성 지원

나. 소관 업무 관련 주민 의견 청취 계획 수립 및 정책 제안 실행

제7조(토론회 등의 청구) ① 주민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의 현안 및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공개 토론회 등을 13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청구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을 청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토론회 등 청구서를 작성하여 전체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청구인 대표는 한 명 또는 여러 사람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청구인 대표가 여러 사람인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토론회 등을 청구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청구인 대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구인 연명부에 연서한 사람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책토론 청구는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청구 동의인원 또는 추천인원은 150명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청구인 대표는 최초로 제안한 사람 또는 동의한 사람이거나 추천한 사람 중 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토론회 등의 접수) ① 전체위원회는 토론회 등 청구서를 연중 수시 접수한다.

② 토론회 등의 개최 청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토론회 등의 청구가 반려된 후 1년 이내에 재청구한 경우
2. 청구일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회 등을 실시했던 경우

제9조(토론회 등의 개최) ① 전체위원회는 토론회 등 청구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전체위원회가 개최 시기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토론회 등의 장소, 참석 범위 등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제10조(토론회 등의 결과 통지) ① 전체위원회는 토론회 등 개최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시장은 토론회 등 결과에 따라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민자치과
입안자	과장 성명	주민자치과장 신 건 국
	팀장 성명	주민참여팀장 이 진 희
	담당자 성명·전화	조 준 수 031-8075-2447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인적 사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직장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단체) 주소]		전자우편주소	
지원 사유				
최근 주요 경력	기간	내용		
	~			
	~			
	~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고양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고양시 관내 사업체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반명함 사진 1매 3.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추천서

접수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추천 받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업(직장명)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단체) 주소]	전자우편주소	
최근 주요 경력	기간	내용	
	~		
	~		
추천 단체 (기관)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추천 사유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제9조에 따라 위 대상자를 고양시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단체)

(관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직장소재지가 고양시인 경우 재직증명서 등 고양시 관내 사업체 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반명함 사진 1매 3. 개인정보처리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	--

제 호

위 축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제9조에 따라 주민참여위원회 제○기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직인)

조사·연구 계획서

- 1. 연구제목
- 2. 목적 및 필요성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 5. 연구 추진 일정

연구내용	일 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6. 연 구 진 : 연구책임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 7. 소요예산 : 인 건 비

통 신 비

여 비

- 8. 기대효과

토론회 등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인 수			
	청구 대상			
	청구 취지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			
청구 이유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토론회(공청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청구인 연명부
------	---------

유의사항

1. 청구인 수는 연명부 상 연서한 수로서 000 명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청구의 대상에는 관련 되는 시책명이나 사업명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 연명부

□ 청구제목 :

연 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메일 (E-mail)	서 명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동의	비동의
							☐	☐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당 내용을 읽고 충분히 숙지하시고 귀하의 자유의지에 따라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명부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토론회 등의 청구를 위한 자격을 확인하고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서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청구일로부터 1년
- 개인정보 제공 : 개인정보 수집 목적과 동일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 제공

유의사항

1. “연번”란에는 서명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성명을 한글로 적습니다.
3. “생년월일”란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4. “주소”란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적고, 상세주소(동번호, 호수 또는 층수)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주소를 적습니다.
5. “서명”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습니다.
6.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한 경우에는 붉은 선으로 두 줄을 그어 지우고, 비교란에 철회한 날짜를 적습니다.
7. “동의여부”란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고양시 주민참여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주민참여위원회의 위원 수 축소 및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폐지로 위원회의 비효율성 및 실효성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전체위원회 위촉직 위원 정원을 15명 이내로 규정함(제2조).
- 나.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관련 조항을 삭제함.
- 다. 그 밖의 조사·연구 및 보고, 토론회 관련 조항의 용어를 재규정하고,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역할을 삭제함(제4조 및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4월 14일

고양시 규칙 제1160호

고양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고양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장애인복지과
입 안 자	과 성 명	장애인복지과장 신 동 엽
	팀 성 명	장애인지원팀장 김 지 안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용 주 031-8075-3299

고양시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부당사용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

□ 제안이유

- 과태료 부과에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 및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연간 과태료 대상 건수가 많지 않아 그 역할이 유명무실하고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이 규칙을 폐지함.

고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4월 14일

고양시 규칙 제1161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료실”이란 자료를 비치·관리하고 이용하도록 지정된 공간을 말한다.
2. “열람실”이란 개인학습을 위해 별도로 지정된 공간을 말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월요일 : 행신·원당·삼송·아람누리·백석·풍동·대화·덕이·일산도서관,”을 “매주 월요일: 행신·원당·신원·별꿈·아람누리·백석·풍동·대화·덕이·일산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 : 화정·신원·마두·식사·한뫼·가좌도서관,”을 “매주 금요일: 화정·삼송·높빛·마두·식사·한뫼·가좌도서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열람실과 자료실 내에 음료, 그 밖의 음식물을 반입하거나 섭취하는 행위. 다만,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긴 음료는 예외로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입 안 자	과장 성명	덕양구도서관과장 최 경 숙
	팀장 성명	도서관정책팀장 이 준 호
	담당자 성명·전화	진 근 숙 031-8075-9012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제안이유

- 도서관 시설 용어의 뜻과 이용자 준수사항인 음식물 섭취행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신규 개관 예정인 높빛도서관을 포함한 시립도서관의 휴관일을 재지정하여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자료실” 과 “열람실” 용어의 뜻을 정의함(제1조의2).
- 나. 신규 개관 예정인 높빛도서관을 포함한 시립도서관의 휴관일을 재지정함(제3조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 다. 이용자 준수사항의 음식물 섭취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함(제4조제1항제4호).
- 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 회의 등 조례로 규정하고 삭제함.

고양시 법률자문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고 양 시 장 이 동 환 인

2023년 4월 14일

고양시 훈령 제401호

고양시 법률자문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고양시 법률자문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내부 법률자문”을 “법률자문”으로, “전화·이메일·방문·회의참석”을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전화·방문·회의참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0조 단서 중 “사전에”를 “미리”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부당한 자문에 대한 조치) 송무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부당한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歪曲)하여 자문한 경우 해당 내용을 감사 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법무담당관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법무담당관 고 미 정
	팀 장 성 명	송무지원팀장 김 홍 덕
	담 당 자 성명 · 전화	전 선 녀 (031-8075-2365)

고양시 법률자문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

□ 제안이유

-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 상용화에 따라 변경된 자문 절차를 훈령에 반영하고, 부당한 자문에 대한 조치 규정을 신설하여 자문 악용 사례를 예방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법률자문의 방법 중 이메일을 삭제하고 법무행정통합지원시스템을 추가하여 규정함(제5조제1항).
- 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자문한 경우 감사 부서에 통보하도록 규정함(제11조).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국토교통부 지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는 스마트 안전장비의 도입을 의무화하였으며,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안전관리비 사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 대부분의 중·소규모 건설공사장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의 도입이 미흡한 실정임.
- 이에 우리시는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장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독려 및 지원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다. 시장 및 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스마트 안전장비의 활용 및 구축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제7조 및 제8조).
- 마. 스마트 안전관리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조사 및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4일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시민안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91, 3층 시민안전과
 - 전 화 : 시민안전과 건설안전팀(031-8075-3053)
 - 팩 스 : 031-8075-493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건설공사 사업장 내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를 도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장의 건설공사 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2. “건설사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주택건설등록업자”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공공공사”란 국가나 정부 기관이 건축주가 되어 직접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행하는 공공 토목·건축 공사를 말한다.
5. “스마트 안전장비”란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그 장비를 구축·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6. “정보주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리되는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안전성·경제성 확보를 위해 융·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기술

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제4조(건설공사 관계자의 책무)**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설안전, 화재예방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및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등 법령을 준수하여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제62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와 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인허가 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도 적용한다.

-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 안전장비의 활용)** ① 시장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등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노사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설치해야 한다.
-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및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스마트 안전장비) 스마트 안전장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계 장비의 접근 위험 경보장치 및 자동화재 감지센서
2. 스마트 안전관제시스템
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안전관리시스템
4. 가설구조물, 지하구조물 및 지반 등의 붕괴 방지를 위한 스마트 계측기
5. 그 밖에 융·복합 건설기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장비

제8조(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기반 마련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
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장비 기술 적용·분석
3. 관내 건설공사 사고 발생 현황 및 실태 분석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시장은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설공사장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스마트 안전관리체계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 등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시민안전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시민안전과장 주 시 운
	팀 장 성 명	건설안전팀장 정 선 화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승 호 031-8075-3053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소비자 보상권 침해를 해소하고자 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정부합동 평가지표)

3. 주요내용

- 가. 관리자의 귀책으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 보상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전략산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전략산업과 킨텍스지원팀(031-8075-3515)

- 팩 스 : 031-8075-4914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킨텍스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취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해야 한다”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등)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것
 2. 캠핑장 내 안전사고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화기(火氣) 및 가스용품을 사용하지 말 것
 3. 사방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전기용품, 화기용품을 사용하지 말 것(다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용품은 사용가능)
 4. 캠핑장 내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반입하지 말 것(다만,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캐러밴 안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가능)
 5. 캠핑장 내에서는 폭죽, 풍등(風燈)의 사용과 판매를 하지 말 것
- ② 관리자는 시설이용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설치하고자” 를 “설치하려고” 로, “사전에” 를 “미리” 로, “얻어야” 를 “받아야” 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준용” 을 “적용” 으로 한다.

제19조를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만3세” 를 “3세” 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전략산업과
입안자	과장 성명	전략산업과장 김 형 기
	팀장 성명	킨텍스지원팀장 양 상 윤
	담당자 성명·전화	황 규 선 031-8075-3515

[별표 2]

사용료 반환 기준(제11조 관련)

시설명	사유	반환 기준		비고
		취소 시기	반환금액	
캐러밴, 오토캠핑장, 일반 야영장 등	1.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	전액	
		사용예정일 1일 전	100분의 90	
		사용예정일 당일	100분의 80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	전액	
		사용예정일 1일 전	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20% 배상	
	3.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 우	전액		

※ 비고

표 이외의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 배상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생략)	제2조(정의) (현행 제3조와 같음)
제2조(위치) (생략)	제3조(위치) (현행 제2조와 같음)
제7조(지도·감독) ① (생략)	제7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 ----- ----- ----- 해야-----.
제11조(사용료의 반환) 관리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반환) ----- ----- ----- -----반환해야 한다.
1.~3. (생략)	1.~3. (현행과 같음)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1. 취사 및 야영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것
2. 캠핑장 내 안전사고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화기(火氣) 및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캠핑장 내 안전사고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화기(火氣) 및 가스용품을 사용하지 말 것
3. 사망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전기용품, 화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용품은 사용가능)	3. 사망이 밀폐된 이동식 야영용 천막 안에서는 전기용품, 화기용품을 사용하지 말 것(다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용품은 사용가능)
4. 캠핑장 내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캐러밴 안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계 법령에	4. 캠핑장 내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반입하지 말 것(다만, 캠핑용 자동차 또는 캐러밴 안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이 관계 법령에 적합

<u>적합한 경우에는 사용가능)</u> 5. <u>캠핑장 내에서는 폭죽, 풍등(風燈)의 사용과 판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② 시설이용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은 관리자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u> 제16조(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u>설치하고자</u> 하는 경우에는 <u>사전에</u> 관리자의 승인을 <u>얻어야</u> 한다. ②~③ (생 략) 제18조(준용) (생 략)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u>한 경우에는 사용가능)</u> 5. <u>캠핑장 내에서는 폭죽, 풍등(風燈)의 사용과 판매를 하지 말 것</u> <u>② 관리자는 시설이용의 세부적인 준수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u> 제16조(부대설비 설치 및 철거) ① -----<u>설치 하려고</u>-----<u>미리</u>-----<u>받아야</u>-----.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적용) (현행과 같음) <삭 제>
--	--

현행					개정안																																																
[별표 1]					[별표 1]																																																
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시설 사용료(제9조 관련)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2. 사용시간 및 추가요금 부과 기준																																																
가. (생략)					가. (생략)																																																
나. 시설 1개소의 이용인원이 6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하는 1명당 3,000원을 추가로 징수한다. 이 경우 만3세부터 적용한다.					나. ----- -----3세----- -----.																																																
다.~라. (생략)					다.~라. (현행과 같음)																																																
[별표 2]					[별표 2]																																																
사용료 반환 기준(제11조 관련)					사용료 반환 기준(제11조 관련)																																																
<table><tr><th rowspan="2">구분</th><th rowspan="2">내용</th><th colspan="2">반환기준</th><th rowspan="2">비고</th></tr><tr><th>취소시기</th><th>반환금액</th></tr><tr><td rowspan="4">캐러밴, 오토캠핑장, 일반 야영장</td><td rowspan="3">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td><td>사용예정일 2일 전</td><td>전액</td><td></td></tr><tr><td>사용예정일 1일 전</td><td>100분의 90</td><td></td></tr><tr><td>사용 예정일 당일</td><td>100분의 80</td><td></td></tr><tr><td>관리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td><td colspan="2">전액</td><td></td></tr></table>					구분	내용	반환기준		비고	취소시기	반환금액	캐러밴, 오토캠핑장, 일반 야영장	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	전액		사용예정일 1일 전	100분의 90		사용 예정일 당일	100분의 80		관리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	전액			<table><tr><th rowspan="2">시설명</th><th rowspan="2">사유</th><th colspan="2">반환 기준</th><th rowspan="2">비고</th></tr><tr><th>취소 시기</th><th>반환금액</th></tr><tr><td rowspan="4">캐러밴, 오토캠핑장, 일반 야영장 등</td><td rowspan="3">1. 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의 경우</td><td>사용예정일 2일 전</td><td>전액</td><td></td></tr><tr><td>사용예정일 1일 전</td><td>100분의 90</td><td></td></tr><tr><td>사용예정일 당일</td><td>100분의 80</td><td></td></tr><tr><td rowspan="2">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td><td>사용예정일 2일 전</td><td>전액</td><td></td></tr></table>					시설명	사유	반환 기준		비고	취소 시기	반환금액	캐러밴, 오토캠핑장, 일반 야영장 등	1. 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	전액		사용예정일 1일 전	100분의 90		사용예정일 당일	100분의 80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	사용예정일 2일 전	전액	
구분	내용	반환기준		비고																																																	
		취소시기	반환금액																																																		
캐러밴, 오토캠핑장, 일반 야영장	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2일 전	전액																																																		
		사용예정일 1일 전	100분의 90																																																		
		사용 예정일 당일	100분의 80																																																		
	관리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	전액																																																			
시설명	사유	반환 기준		비고																																																	
		취소 시기	반환금액																																																		
캐러밴, 오토캠핑장, 일반 야영장 등	1. 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의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	전액																																																		
		사용예정일 1일 전	100분의 90																																																		
		사용예정일 당일	100분의 80																																																		
	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인해 시설	사용예정일 2일 전	전액																																																		

등	이용이 불가능		
	하거나 천재지		
	변 등에 따라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표 이외의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배상

	<u>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u>	<u>사용예정일 1일 전</u>	<u>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10% 배상</u>	
		<u>사용예정일 당일</u>	<u>사용료 전액 및 사용료의 20% 배상</u>	
	<u>3. 천재지변, 감염병 등으로 인해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u>	<u>전액</u>		

※ 비고

표 이외의 분쟁사항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 배상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기존 주택 건축물에 대한 침수방지시설(물막이판 및 차수판 등)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우리시의 기존 주택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시 대상 및 상한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난대응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재난대응과 자연재난팀 (031-8075-2994)

- 팩 스 : 031-8075-499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고양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의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② 주택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 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6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설치규격)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절한 규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제9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설치 개소당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설치 개소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양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재난대응과
입안자	과장 성명	재난대응과장 박성완
	팀장 성명	자연재난팀장 정일윤
	담당자 성명·전화	김지나 031-8075-2994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농업인대상의 시장부문과 시장내용을 고양시의 농업 규모와 시장 실적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고양시 농업인대상 수상자 시장부문에서 중복적인 부문을 통합하고 작물의 용도에 따라 재분류함(안 제3조).
- 나. 농업인과 생산자단체의 수상후보자 자격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 다.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촉 대상을 정비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함(안 제6조).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4일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라. 제출기관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 전 화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8075-4233)
 - 팩 스 : 031-8075-438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농·축·수산물”을 “농축수산물”로, “앞당기는데”를 “앞당기는 데”로, “농·축·수산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을 “농·축·수산업인”으로, “시상하는데”를 “시상하는 데”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특용작물부문
2. 원예작물부문
3. 축수산·친환경·신기술부문
4. 여성농업인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 및 축산·수산업”을 “농축수산업”으로, “농·축·수산업”을 “농축수산업”으로, “기여한”을 “이바지한”으로,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농업인”을 “농·축·수산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5년이상”을 “5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1. 농업인: 친환경농업, 첨단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등 과학영농과 과학적인 사양관리, 가축개량, 증식, 어획량 제고

등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농업인, 축산업인 및 수산업인

2. 생산자 단체: 과학 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 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작목반 등 품목별 생산자 단체로서 작목반,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 영농조합법인, 축산·어촌계 등 농축수산업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단체

제5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2항에 따라”로,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고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④ 위원은 위원의 해당 지역 수상 후보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 ⑥ 심사위원회는 수상자 선정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② 간사는 고양시 농업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제1항 중 “규정된”을 “따른”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5조에 따라”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1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를 “제1항에 따른” 으로, “따로” 를 “규칙으로” 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수상자에 대하여는” 을 “시장은 수상자에게” 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업관련” 을 “농업 관련”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등 지원시” 를 “등을 지원하는 경우”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내·외” 를 “국내외” 로 한다.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제16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농업정책과장 우 제 구
	팀장 성명	농업정책팀장 진 중 구
	담당자 성명·전화	정 혜 미 031-8075-4233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과학화 및 농·축·수산물의 고품질화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선진농업과 복지농촌 건설을 앞당기는데 공헌한 농·축·수산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나 생산자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생산부문 2. 화훼부문 3. 채소·과수·특작부문 4. 축산·수산부문 5. 친환경농업·신기술부문 6. 여성농업인부문 ② 수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실시하되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인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상후보자 심사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고양시 관내에서 거주하며 농업 및 축산·수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축·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인이나 생산자 단체로 한다. 1. 농업인 : 친환경농업, 첨단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등 과학	제1조(목적) ----- ---농축수산물----- ----- -----앞당기는 데-----농·축·수산업인----- -----시상하는 데----- ----.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량·특용작물부문 2. 원예작물부문 3. 축수산·친환경·신기술부문 4. 여성농업인부문 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 또는 1단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 수상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 -----농축수산업----- -----농축수산업----- -----이바지한-----각 호의 어느 하나에-----농·축·수산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1. 농업인: 친환경농업, 첨단 기술농업, 고품질 농업, 수출농업 등 과학

<u>영농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농업인</u> 2. <u>생산자단체 : 과학 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 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작목반 등 품목별 생산자 단체</u> 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u>5년이상</u> 종사한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u>의하여</u> 수상한 개인 및 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생 략) ② (생 략) 1.~3. (생 략) 4. <u>기타</u> 공적 증빙 자료 ③ <u>제2항의</u> 규정에 <u>의거</u>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u>아니한다</u>.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생 략) ②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u>15인</u>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u>고양시농정심의회위원</u> 중에서 <u>시장이 위촉한다</u>.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당해 지역 수상 후보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이를 관여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u>영농과 과학적인 사양관리, 가축개량, 증식, 어획량 제고 등으로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고 있는 농업인, 축산업인 및 수산업인</u> 2. <u>생산자 단체: 과학 영농을 통한 생산활동과 공동출하 등 유통가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여 자율 영농의 시범을 보이고 있는 우수작목반 등 품목별 생산자 단체로서 작목반,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 영농조합법인, 축산·어촌계 등 농축수산업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단체</u> ② -----<u>5년 이상</u>-----. ③ -----<u>따라</u>-----.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의</u>----- ③ <u>제2항에 따라</u>-----<u>않는다</u>. 제6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u>15명</u>-----. ③ 위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u>고양시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u> 위원 중에서 <u>시장이 위촉한다</u>. ④ 위원은 위원의 해당 지역 수상 후보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	---

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제8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
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
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
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심사위원회의 사
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서기
는 농업정책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제4
조에 규정된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5
조의 규정에 의거 추천된 후보자의 공
적심사서류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현지 조사 결과를 근거
로 심사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심사기준과 평가방
법을 따로 정한다.

제13조(시상) ① (생 략)

② 수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에서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14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이 조례에
의한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기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후보자로 추천

⑤ -----
재적위원-----
-----.

⑥ 심사위원회는 수상자 선정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
원에게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
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고양시 농업인대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심사기준) ① -----
----따른-----제5조
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

② ----제1항에 따른-----
-----규칙으로-----.

제13조(시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수상자에게-----
-----.

제14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게
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농업 관련-----

2. 영농자금 등 지원시 우선권 부여 3. 국내·외 연수기회 부여 4. (생 략) <u>제16조(시행규칙)</u> 이 조례의 시행에 관 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등을 지원하는 경우----- 3. <u>국내외</u> ----- 4. (현행과 같음) <u><삭 제></u>
---	---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개정에 맞춰 농업인대상 심사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고양시 농업인대상 심사기준을 조례 개정에 맞춰 정비함(안 제3조).

나. 평가기준과 공적 심사 서식을 신설함(안 제3조, 별표 및 별지 제3호 서식).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농업기술센터(농업정책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695

- 전 화 :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8075-4233)

- 팩 스 : 031-8075-438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부문별 공적심사 평가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식량·특용작물부문: 과학·기술영농을 통한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비의 절감과 브랜드의 개발 등으로 고품질의 고양식량 및 특용작물의 생산성 증대에 공헌한 정도
2. 원예작물부문: 화훼·채소·과수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고품질로 생산성 향상과 수출농업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 및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원예 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축수산·친환경·신기술부문: 과학적인 사양관리, 가축개량, 증식, 어획량 제고 등으로 축수산 발전에 이바지했거나 친환경농법 및 신기술 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공헌한 정도
4. 여성농업인부문: 여성 농업인의 권익향상과 합리적인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정도

제4조제2항 중 “규정한”을 “따른”으로, “조사·확인하는데”를 “조사·확인하는 데”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서식) 후보자 추천에 따른 서식 및 심사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심사표: 별지 제3호서식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입안자	과장 성명	농업정책과장 우 제 구
	팀장 성명	농업정책팀장 진 종 구
	담당자 성명·전화	정 혜 미 031-8075-4233

부문별 공적심사 평가기준(제3조 관련)

부 문	평 가 내 용	배점
식량·특용작물	· 재배기술 및 생산성 향상	20
	· 영농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	15
	· 지역사회(농업) 공헌	15
	· 그 밖의 우수사례	10
원예작물	· 재배기술 및 생산성 향상	20
	· 유통 및 판매 우수 사례	15
	· 지역사회(농업) 공헌	15
	· 그 밖의 우수사례	10
축수산	· 사육기술 및 생산성 향상	20
	· 유통 및 판매 우수 사례	15
	· 지역사회(축산) 공헌	15
	· 그 밖의 우수사례	10
친환경농업· 신기술	· 친환경, 신기술농업 실천 내용	20
	· 친환경농업 보급 및 홍보	15
	· 지역사회(농업) 공헌	15
	· 그 밖의 우수사례	10
여성농업인	· 농어업경영실적	20
	·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 기여도 (단체 활동 실적 등)	15
	·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교육실적 마을봉사 실적 등)	15
	· 그 밖의 우수사례	10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심 사 표

□ ○○○○ 부문(성명)

구 분	공 적 내 용	배점	평점
소 계		60	
현지조사 결과		40	
합 계		10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농업인 대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후보자의 자격) 「고양시 농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생산자 단체”란 작목반, 위탁영농회사, 기계화영농단, 영농조합법인, 축산·어촌계 등 농·축·수산업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쌀생산부문 : 쌀생산분야에서 과학·기술영농을 통한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비의 절감과 브랜드의 개발 등으로 고품질의 고양 쌀 생산성 증대에 공헌한 정도 2. 화훼부문 : 화훼분야에서 기술개발과 고품질로 생산성향상과 수출농업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 및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화훼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채소·과수·특작부문 : 채소·과수·특작분야에서 기술·고품질·수출농업을 실현하여 경쟁력의 제고 및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발전에 공헌한 정도 4. 축산·수산부문 : 양축 환경개선 및 과학적인 사양관리로 사료비를 절감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축개량과	제1조(목적) ----- -----시행에----- -----. <삭 제> 제3조(심사기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부문별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며, 부문별 공적 심사 평가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1. 식량·특용작물부문: 과학·기술영농을 통한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비의 절감과 브랜드의 개발 등으로 고품질의 고양식량 및 특용작물의 생산성 증대에 공헌한 정도 2. 원예작물부문: 화훼·채소·과수 분야에서 기술개발과 고품질로 생산성향상과 수출농업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 및 유통기능의 활성화로 원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 3. 축수산·친환경·신기술부문: 과학적인 사양관리, 가축개량, 증식, 어획량 제고 등으로 축수산 발전에 이바지했거나 친환경농법 및 신기술 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공헌한 정도 4. 여성농업인부문: 여성 농업인의 권익향상과 합리적인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정도

<u>유통기능을 활성화하고, 양식어업·내수면 어업·수산물 가공업 등의 분야에서 수산자원의 증식·양식 및 어획량의 제고 등으로 수산발전에 공헌한 정도</u> 5. <u>환경농업·신기술부문 : 친환경농업의 실천 및 기존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신경영기법이나 신기술의 개발보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공헌한 정도</u> 6. <u>여성농업인부문 : 여성 농업인의 권익향상과 합리적인 농업경영을 통하여 농촌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정도</u>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생 략) ② 조례 제11조제1항에 <u>규정한</u>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는 공적내용의 사실 여부를 <u>조사·확인하는데</u> 그치며 조사 항목별로 조사자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서식)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서 및 공적조서의 서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6조(시행규정) 수상후보자의 심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공적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u>따른</u>----- ----- -----<u>조사·확인하는 데</u>----- ----- -----. 제5조(서식) 후보자 추천에 따른 서식 및 심사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심사표: 별지 제3호서식 <삭 제>
--	---

현행	개정안																																																
<신설>	[별표] 부문별 공적심사 평가기준(제3조 관련) <table><tr><th>부문</th><th>평가내용</th><th>배점</th></tr><tr><td rowspan="4">식량·특용작물</td><td>· 재배기술 및 생산성 향상</td><td>20</td></tr><tr><td>· 영농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td><td>15</td></tr><tr><td>· 지역사회(농업) 공헌</td><td>15</td></tr><tr><td>· 그 밖의 우수사례</td><td>10</td></tr><tr><td rowspan="4">원예작물</td><td>· 재배기술 및 생산성 향상</td><td>20</td></tr><tr><td>· 유통 및 판매 우수 사례</td><td>15</td></tr><tr><td>· 지역사회(농업) 공헌</td><td>15</td></tr><tr><td>· 그 밖의 우수사례</td><td>10</td></tr><tr><td rowspan="4">축수산</td><td>· 사육기술 및 생산성 향상</td><td>20</td></tr><tr><td>· 유통 및 판매 우수 사례</td><td>15</td></tr><tr><td>· 지역사회(축산) 공헌</td><td>15</td></tr><tr><td>· 그 밖의 우수사례</td><td>10</td></tr><tr><td rowspan="4">친환경농업·신기술</td><td>· 친환경, 신기술농업 실천 내용</td><td>20</td></tr><tr><td>· 친환경농업 보급 및 홍보</td><td>15</td></tr><tr><td>· 지역사회(농업) 공헌</td><td>15</td></tr><tr><td>· 그 밖의 우수사례</td><td>10</td></tr><tr><td rowspan="4">여성농업인</td><td>· 농어업경영실적</td><td>20</td></tr><tr><td>·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 기여도 (단체 활동 실적 등)</td><td>15</td></tr><tr><td>·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교육실적 마을봉사 실적 등)</td><td>15</td></tr><tr><td>· 그 밖의 우수사례</td><td>10</td></tr></table>	부문	평가내용	배점	식량·특용작물	· 재배기술 및 생산성 향상	20	· 영농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	15	· 지역사회(농업) 공헌	15	· 그 밖의 우수사례	10	원예작물	· 재배기술 및 생산성 향상	20	· 유통 및 판매 우수 사례	15	· 지역사회(농업) 공헌	15	· 그 밖의 우수사례	10	축수산	· 사육기술 및 생산성 향상	20	· 유통 및 판매 우수 사례	15	· 지역사회(축산) 공헌	15	· 그 밖의 우수사례	10	친환경농업·신기술	· 친환경, 신기술농업 실천 내용	20	· 친환경농업 보급 및 홍보	15	· 지역사회(농업) 공헌	15	· 그 밖의 우수사례	10	여성농업인	· 농어업경영실적	20	·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 기여도 (단체 활동 실적 등)	15	·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교육실적 마을봉사 실적 등)	15	· 그 밖의 우수사례	10
부문	평가내용	배점																																															
식량·특용작물	· 재배기술 및 생산성 향상	20																																															
	· 영농규모화 및 생산비 절감	15																																															
	· 지역사회(농업) 공헌	15																																															
	· 그 밖의 우수사례	10																																															
원예작물	· 재배기술 및 생산성 향상	20																																															
	· 유통 및 판매 우수 사례	15																																															
	· 지역사회(농업) 공헌	15																																															
	· 그 밖의 우수사례	10																																															
축수산	· 사육기술 및 생산성 향상	20																																															
	· 유통 및 판매 우수 사례	15																																															
	· 지역사회(축산) 공헌	15																																															
	· 그 밖의 우수사례	10																																															
친환경농업·신기술	· 친환경, 신기술농업 실천 내용	20																																															
	· 친환경농업 보급 및 홍보	15																																															
	· 지역사회(농업) 공헌	15																																															
	· 그 밖의 우수사례	10																																															
여성농업인	· 농어업경영실적	20																																															
	· 여성농업인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 기여도 (단체 활동 실적 등)	15																																															
	·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교육실적 마을봉사 실적 등)	15																																															
	· 그 밖의 우수사례	10																																															

<신 설>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심 사 표

☐ ○○○ 부문(성명)

구 분	공 적 내 용	배점	평점
소 계		60	
현지조사 결과		40	
합 계		100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 (인)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민원실의 운영 및 민원상담인에 대한 위촉 등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5조).
- 다. 민원실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라. 민원실 민원상담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민원여권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민원여권과 시민봉사팀(031-8075-2457)

- 팩 스 : 031-8075-4960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관련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
- 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시장은 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2.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한다)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업무를 접

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상담인의 위촉 등) ① 시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실을 방문한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을 민원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봉사 정신이 투철하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3. 자원봉사 분야 및 행정실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민원여권과
입 안 자	과 성 장 명	민원여권과장 홍 호 조
	팀 성 장 명	시민봉사팀장 김 선 영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여 진 031-8075-2457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취업애로 및 사회·경제·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등 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15조제3항).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청년담당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줌시티 3층 303호
- 전 화 : 청년담당관 청년지원팀(031-8075-2725)
- 팩 스 : 031-8075-489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청년 “” 을 “청년” ” 으로, “만 18세” 를 “18세” 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무주택 청년가구 “” 를 “무주택 청년가구” ” 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경우” 를 “해당할 때”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때”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부적당하다고” 를 “적당하지 않다고” 로, “경우” 를 “때” 로 한다.

제1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업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2.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청년담당관
입 안 자	담 당 관 성 명	청년담당관 최 현 석
	팀 장 성 명	청년지원팀장 이 용 복
	담 당 자 성명·전화	곽 유 찬 031-8075-2725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용어의 정의) (생략) 1. “청년”이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하며,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2.~5. (생략) 6. “무주택 청년가구”란 청년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주와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인 가구를 말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3. 건강 등 개인적 사정으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청년” -----18세----- ----- ----- -----. 2.~5. (현행과 같음) 6. “무주택 청년가구” ----- ----- -----. 제11조(위원의 해촉) ----- -----해당할 때-- ----- -----. 1. ----- -----때 2. ----- 때 3. ----- -----때 4. ----- -----적당하지 않다고----때 제15조(청년의 능력개발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사업범위,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2. 청년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등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통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화시설 운영 기준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고양시 문화시설의 명칭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나. 문화시설 위탁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다. 문화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라. 입장료 및 수강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7조).
- 마. 박물관 운영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문화예술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줌시티 4층 문화예술과
- 전 화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031-8075-3418)
- 팩 스 : 031-8075-492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고양시민의 문화 체험·교육·관람 및 지역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등 문화 복지의 향상과 효율적인 지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양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사용”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대관하여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특별 부대시설”이란 기존 시설 외에 공연 또는 행사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 음향, 무대장치 등의 특수설비를 말한다.

제3조(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업 및 기능) 제3조에 따른 문화시설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 가. 영유아와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 나. 건강한 가족문화 활성화 및 지역사회 문화예술 환경 향상
- 다. 그 밖에 박물관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가. 각종 미디어 교육 및 체험

나. 무료영화 상영 등 영화관 운영

다. 미디어 관련 장비, 시설의 대여 및 대관

라.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고양생활문화센터

가.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과 지원

나. 각종 생활문화예술 교육, 전시 및 행사

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고양시 음악창작소

가.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

나. 각종 음악 관련 교육 및 체험

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고양시 문예회관

가.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복지향상 지원

나.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고양문화의집

가. 강좌 운영 및 지원

나. 교육 관련 행사 및 체험

다.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관리 및 운영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7. 고양시 예술창작공간

가. 창작공간 운영 및 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나. 전시, 학술, 교육 등 과정 운영

다.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사회 관계망 구축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문화시설의 운영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문화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 출자·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문화시설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서면으로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2. 수탁자의 명칭 및 주소
3. 위탁 기간 및 위탁 재산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2.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4.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 훼손 등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협약 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문화시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수탁자가 공익상 또는 재산관리상의 이유로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해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운영지원)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도 및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거나 운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경고, 시정명령, 예산 지원의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제11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시

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기존의 시설 외에 특별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또는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3. 시설운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자는 사용일 전까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② 문화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4조(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 1. 사용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 1. 전액 반환
 - 가.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 다. 관리자의 귀책 또는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된 경우

2. 90퍼센트 반환: 사용자가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사용료의 반환 방법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 문예회관의 경우는 별도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16조(입장료 등) ① 문화시설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고양시 어린이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체험전시물 이용 및 체험과정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미리 입장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어린이박물관의 입장료 및 감면 대상,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7조(수강료 등) ① 문화시설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려는 사람은 수강 신청 시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및 반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8조(입장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시설 내 질서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3.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시각장애인과 동반하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4.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을 만지는 행위

5. 고성, 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입장하는 행위

7.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제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시설의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자의 원상복구 등)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을 중단한 때에는 시설에 설치한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

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파손, 멸실, 훼손했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이 철거 및 원상복구하고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제20조(권리의 양도 등의 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4장 박물관 운영위원회

제21조(박물관장의 임명) 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임명 하되,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2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장
2. 박물관 업무 담당 국장
3. 박물관 업무 담당 과장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아동, 교육, 건축, 전시, 역사 등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직원 중에서 관장이 지명한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 고양시 문예회관 사용 조례
4.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문예회관 사용 조례」 및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해진 사항허가 등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4조(위탁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문예회관 사용 조례」 및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했거나 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5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되거나 임명된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문화예술과장 서 은 원
	팀 장 성 명	문화시설팀장 김 경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성 순 031-8075-3418

[별표 1]

문화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명칭		위치	주요 시설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6(화정동)	전시실, 교육실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성사동)	강의실, 스튜디오, 편집실, 영화관
고양생활문화센터	아람마당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6(마두동)	연습실, 다목적실
	호수마당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장항동)	
	어울림마당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성사동)	
고양시 음악창작소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성사동)	녹음실, 합주실
고양시 문예회관		고양시 고양시청로 10(주교동)	공연장
고양문화의집		고양시 일산서구 산현로 99(탄현동)	강의실, 문화관람실
고양시 예술창작공간	해움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장항동)	창작공간, 교육공간, 전시공간
	새들	고양시 덕양구 신평길 217(신평동)	

[별표 2]

문화시설의 사용료(제13조 관련)

※ 각 시설의 사용범위는 해당되는 부대시설(무대장치, 조명, 음향, 냉난방 시설 등)을 포함한다.

1.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층수	시설명	사용료(VAT 별도)		비고
1층	다목적실	50,000원		■ 프로젝터 ■ 좌석 ■ 일 대관료
	기획전시실	1,000원/㎡		■ 일 대관료
3층	체험교육실	1,000원/㎡		■ 프로젝터 ■ 좌석 ■ 일 대관료
	소강당	평일	80,000원	■ 무대/객석 144석 ■ 방송시설 ■ 1회 4시간 기준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적용 ■ 초과 시간당 - 평일 : 20,000원 - 주말, 공휴일 : 25,000원 ■ 대관료 감경 - 월 7회 이상 ~ 14회 미만 : 20퍼센트 감경 - 월 14회 이상 : 40퍼센트 감경
		주말, 공휴일	100,000원	

※ 박물관 휴관일에는 대관을 하지 않는다.

2.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시설명	기준	사용료(VAT포함)	비고
전문 편집실 (Window 기반)	1시간	3,000원	
전문 편집실 (Mac 기반)	1시간	3,000원	
비디오 스튜디오	1시간	10,000원	
오디오 스튜디오	1시간	10,000원	
어울림 영화관	1시간	30,000원	

3. 고양생활문화센터

면적 \ 구분	사용료 (VAT포함)	시설명	비고
15㎡미만	5,000원	아람(개인연습실1,2)	· 기본 3시간 · 1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15㎡~50㎡미만	10,000원	아람(밴드실), 호수(모임실1,2), 어울림(미술실 1,2)	
50㎡~100㎡미만	15,000원	아람(작은연습실1,2 무용실), 어울림(동아리실 1,2,3,4)	
100㎡~150㎡미만	20,000원	아람(다목적실), 어울림(연습실 1,2,3)	
150㎡~200㎡미만	25,000원	아람(연습실), 호수(다목적실)	
200㎡초과	50,000원	어울림(마주침공간)	

4. 고양시 음악창작소

시설명	기준	사용료(VAT 포함)	비고
녹음실 (A스튜디오)	1시간	50,000원	엔지니어 포함
	1시간	30,000원	엔지니어 미포함
합주실 (B스튜디오)	1시간	10,000원	
소형연습실 (B스튜디오)	1시간	5,000원	

5. 고양시 문예회관

○ 공연장 사용료

사용료 (공연장)	평일			휴일			비고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7:00)	야간 (18:00 ~ 22:00)	
	70,000원	80,000원	90,000원	80,000원	90,000원	100,000원	
1일(09:00~22:00)	200,000원			250,000원			*VAT별도
1.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해당요금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2. 사용시간이 구분에 미달할 때의 사용료는 전액 징수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

시설명		기준	사용료	비고
악기	가. 그랜드피아노 (삼익 프렐뮈어 그랜드 피아노 JP-208)	1회	10,000원	◦피아노 조율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유선마이크 1개 추가 시 2,000원 징수 ◦무선마이크 1개 추가 시 3,000원 징수 ◦녹음 시 저장장치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당일 행사를 위한 분장실 및 출연자대기실 사용 시 사용료를 받지 않는다.
음향	가. 유선마이크	1회 2개	4,000원	
	나. 무선마이크	1회 2개	6,000원	
	다. 녹음료	1회 1개	5,000원	
조명	가. 종합조명	1회	20,000원	※ 공연장 진행물품(의자, 테이블, 보면대, 단상 등 하나라도 사용 시 신청) ※ 현수막 사이즈(10M * 0.9M) ※ 외부현수막 사이즈(2.3M * 8.8M) - 제작·설치·철거 사용자 부담 ※ 1회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4시간 이내) 를 말한다.
영사	가. 프로젝터	1회	10,000원	
그 밖의 사항	가. 공연장 진행물품	1식1회	5,000원	
	나. 현수막 게첨료	1건	5,000원	
	다. 외부현수막 게첨료	1건(2주)	20,000원	
	라. 영화, 비디오촬영	1건	30,000원	
	마. 라디오, TV중개료	1회	5,000원	
	바. 이동형무대(접이식)	1회	10,000원	

○ 냉난방 사용료

요금구분	기준	비고
냉난방 사용료	시간당	◦ 냉방은 6월부터 10월까지 난방은 11월부터 4월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의 급변화 시는 예외로 한다. ◦ 냉난방 사용료 = 동력(kW) × 전력단가(원) × 사용시간 ※ 전력단가는 한국전력공사의 고시단가로 책정한다.

6. 고양문화의집

○ 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VAT포함)	비고
문화관람실	10:00~18:00	15,000원/시간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토, 일요일은 기준요액의 20퍼센트 가산
	18:00~21:00	20,000원/시간	
냉난방비	시간당		○냉, 난방사용료 : 동력(kw)×전력단가(원)×사용시간

○ 부대시설 사용료

구분	기준	사용료(VAT포함)	비고
○ 피아노	1회	20,000원	○피아노 조율비는 사용자 부담 ○유선마이크 추가 시 1개당 2,000원
○ 빔프로젝트	1회	10,000원	
○ 마이크(유선)	기본2개	10,000원	
○ 마이크(무선)	1개	10,000원	
○ 음향시설	1회	10,000원	

7. 고양시 예술창작공간

구분	내용	비고
창작공간 사용료	○ 창작공간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창작공간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 다만, 입주기간에 발생하는 실비(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냉난방비 등)는 입주한 자가 부담한다.	

※ 사용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별표 3]

어린이박물관의 입장료 및 감면 대상, 반환 기준(제16조 관련)

1. 입장료 및 감면 대상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 (20명 이상)	
영아·유아	3세(36개월) 미만	무료	무료	관련 증명서 지참
일반	3세(36개월) 이상	5,000원	3,500원	3세~64세
입장료 면제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2. 단체관람(20명 이상) 인솔교사 13.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사람 14. 65세 이상인 사람 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무료	무료	관련 증명서 지참
고양시민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3,500원	3,500원	관련 증명서 지참

※ 입장료 감면 대상자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등)를 제시해야 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어린이 놀이·교육시설, 박람회 등과 제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3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다.

※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경기도 문화의 날에 입장료를 3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다.

2. 반환 기준

구분	반환 기준	반환 금액
개인 및 단체	○ 예매한 회차 입장시간 전까지 ○ 천재지변 등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박물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한 경우	전액

[별표 4]

수강료 및 반환 기준(제17조 관련)

1.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구분	개인	단체(20명이상)	비고
수강료	30,000원 이하	30퍼센트 감경	○ 1회 기준 ○ 각 프로그램별 필요한 교재비, 재료비 포함 ※ 무료강좌의 경우 재료비는 별도 수납 가능

※ 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개별 강의의 수강료를 산정함.

2. 고양영상미디어센터

강좌명	기준	금액	비고
전문미디어 교육 (파이널컷, 모션, 프리미어, 포토샵 등)	1시간	3,000원~10,000원	
미디어인문학 교육 (영화감상, 비평 등)	1시간	2,000원~8,000원	
IT 교육 (맥OSX, 스마트폰 활용 등)	1시간	2,000원~8,000원	
세대공감 교육 (어린이, 청소년 UCC제작, 주부 아이 성장 앨범 만들기, 실버 영화 속 추억여행 등)	1시간	2,000원~8,000원	
공동체 교육 (단체 미디어 교육, 스튜디오 체험 등)	1시간	2,000원~10,000원	

※ 강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개별 강의의 수강료를 산정함.

3. 고양문화의집

○ 수강료

구분	기준	금액	비고
정규프로그램	1명 1개월	15,000원 ~ 25,000원	○ 교재비, 재료비는 본인 부담 ○ 교육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4. 수강료 반환 기준

구분	반환 기준	반환 금액
1. 천재지변 등 피할 수 없는 사정에 따라 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설의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하게 된 경우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수업 개시 전	○ 전액 환불
	○수업 개시 후	○ 교육된 수업 일수를 제외하고 반환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문화시설별 운영시간에 대하여 규정함(안 별표 1).

나. 사용 신청 방법, 절차 및 서식을 규정함(안 제3조 및 별지 제1호서식).

다. 특별 부대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별지 제2호 서식).

라. 사용료의 반환 방법, 절차 및 서식을 규정함(안 제5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문화예술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 126번길 91, 줌시티 4층 문화예술과
- 전 화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031-8075-3418)
- 팩 스 : 031-8075-492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① 문화시설의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문화시설 누리집, 누리소통망(SNS) 등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사용 신청) ①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문화시설을 사용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 관리상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협의하여 허가 내용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시장은 사용 신청이 둘 이상 접수되면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승인해야 한다.

제4조(특별 부대시설의 설치) 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 부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 부대시설 설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 다음 날까지 설치 가능 여부를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신청) ①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반환을 결정하면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에 반환금을 입금해야 한다.

제6조(대장의 작성)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시설 사용 신청 접수 허가 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시설 특별 부대시설 대장을 갖추고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

1. 고양시 문예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2. 고양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소관부서		문화예술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문화예술과장 서 은 원
	팀 장 성 명	문화시설팀장 김 경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성 순 031-8075-3418

[별표 1]

문화시설 운영시간 및 휴관일(제2조 관련)

시설명	운영시간	휴관일	비고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오전10시~오후6시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오전9시~오후6시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고양생활문화센터 (아람, 호수, 어울림)	(평일)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오전10시~오후6시	일요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	
고양시 음악창작소	오전10시~오후9시	일요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	
고양시 문예회관	오전9시~오후10시	일요일, 월요일 및 법정 공휴일	
고양문화의집	(평일)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오전10시~오후6시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	

※ 각 시설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변동될 수 있음

※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문화시설 사용(변경)신청서				
사 용 자	단체명 (대표자명)		성 별	☐ 남자 ☐ 여자
	주소		연 락 처	
	이 메 일		사용인원	
신 청 내 용	행사명 및 사용 목적			
	사용 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 시설	기본 시설		
		부대 시설		
	무대 연습 (해당사항 있는 경우)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변경 사항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첨 부	·행사계획서, 공연자등록증, 공연신고확인증 등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 시설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특별 부대시설 설치 신청서			
단체명 (대표자명)		성별	☐ 남자 ☐ 여자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행사명			
시설 내용			
시설 사유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문화시설 특별 부대시설 설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문화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신청서					
단체명 (대표자명)		성별	☐ 남자 ☐ 여자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행사명 또는 강좌명					
사용 시설	기본 시설				
	부대 시설				
사용(수강) 기간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반환 사유					
반환 금액					
입금 계좌	○은행명(예금주명): ○계좌번호:				
「고양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문화시설 사용 신청 접수 및 허가 대장

접수		사용 물건명	신청자		사용 목적 또는 행사명	입장 예정 인원	협조 (조회) 내용	허가 기간	특별부대 시설개요	사용료	허가		비고	결재	
번호	월일		주소	성명							번호	월일		담당	팀장

[별지 제5호서식]

문화시설 특별 부대시설 대장

번호	신청 및 지시일자	설비 물건명	신청자		사용기간	특별설비 시설개요	시설 기간	시설비 계산액	시설일시	원상회복 일시	사용허가 번호	비고
			주소	성명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하여 현장
평가단의 구성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기준 등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현장평가단에 민간전문가(2명) 및 시민단체원(1명)을 증원하여 구성함
(안 제10조제1항).
- 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제2부시장에서
제1부시장으로 변경함(안 제13조제2항).
- 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결과가 부진한 업체에 대한 평가
결과의 등급 및 적용 기준을 현행 환경부 지침에 맞춰 변경함(안 제20조
및 안 별표 2).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자원순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2층 자원순환과

- 전 화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정책팀(031-8075-2683)

- 팩 스 : 031-8075-4926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제1호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해”를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민만족도 평가””를 ““주민만족도 평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실적 서류평가””를 ““실적서류 평가””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3항 중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마스크, 기타”를 “마스크 등”으로, “책임성을 포함한다”를 “책임성을 대상으로 한다”로 한다.

① 평가대상은 고양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평가대상 업체”라 한다)로 한다.

제6조 앞의 “제2장 평가절차”를 삭제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전달해야 하며, 평가지침을 변경할 때에도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변경된 평가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에는”을 “평가대상 업체를 평가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평가계획에는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로, “하고,”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로, “통지 받은”을 “받은”으로 한다.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별표 1에 따라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등을 실시하고,

제11조에 따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의 평가 자료를 활용하거나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2명”을 “4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명”을 “3명”으로 한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12명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제11조 앞의 “제3장 평가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제4호 중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를 “계약해지”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2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아니하여야”를 “않아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사직하고자

하는”을 “사직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야기하는”을 “일으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판단될 때”를 “판단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부적당하다고”를 “적당하지 않다고”로 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본문 중 “소집하고자”를 “소집하려고”로, “통지하여야”를 “알려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장 및 관련 평가대상”을 “공무원 및 평가대상”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평가대상 업체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 앞의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을 삭제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등)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 해

지 및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대행계약의 해지 및 영업정지 등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 제목 중 “대행계약 명시”를 “대행계약서 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속적”을 “지속적인”으로, “명시하여야”를 “계약서에 분명하게 밝혀 적어야”로 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표창, 포상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에 대한 적용례) 제20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실시하는 ‘2023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

기는 제1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입 안 자	과 성 장 명	자원순환과장 안 명 렬
	팀 성 장 명	자원순환정책팀장 신 각 식
	담 당 자 성명·전화	강 준 구 031-8075-2683

[별표 2]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등 급	평가점수	조치사항
		대행기간 중
탁 월	90점 이상	1위, 2위, 3위 시장 표창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개선명령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
부 진	60점 미만	영업정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1장 총칙</u> 제2조(정의) (생략)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해 고양시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주민만족도 평가”란 독립된 외부기관이나 단체가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주민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3. (생략) 4. “실적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행정처분, 민원 처리,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환경미화원의 노동조건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의 공무원 또는 독립된 외부기관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규,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 원칙) ①~② (생략)	<u><삭제></u>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 -----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 ----- ----- ----- ----- -----. 2. “주민만족도 평가” ----- ----- ----- ----- -----. 3. (현행과 같음) 4. “실적 서류평가” ----- ----- ----- ----- -----.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 원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생략)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조례에 의해 고양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노동자의 적정임금 지급, 노동환경 개선(근무복, 마스크, 기타) 및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2장 평가절차

제6조(평가지침)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 평가지침을 변경하는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시장은 평가지침 작성 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③ -----않도록 해야

-----그렇지 않다.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고양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평가대상 업체”라 한다)로 한다.

② -----

 마스크 등

-----책임성을 대상으로 한다.

〈삭 제〉

제6조(평가지침) ① 고양시장(이하 “시
장”이라고 한다)은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②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 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

2.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평가지침을 전달해야 하며, 평가지침을 변경할 때

4.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시장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에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5. (생략)

제8조(평가 실시) ① (생략)

② 시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등을 별표 1에 따라 실시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에도 변경일부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에 변경된 평가지침을 전달해야 한다.

제7조(평가계획) ① -----평가대상
업체를 평가하기 위하여-----

--.

② 평가계획에는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현행과 같음)

제8조(평가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별표 1에 따라 주민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평가, 실적 서류평가 등을 실시하고, 제11조에 따른 고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알려
야 한다. 이 경우-----
--받은-----
-----.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의 평가 자료를 활용하거나 평가대상 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4. 그 밖에 시장이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대
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이루어진 9명의 현
장 평가단으로 구성한다.

1. 청소·환경분야 민간전문가 2명
2. 청소 또는 환경관련 시민단체원 2명
- 3.~4. (생 략)
- ②~③ (생 략)

제3장 평가위원회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①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평가대상 업체의 평가에 대해 자문하고 심의·의결 한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기능) (생략)

- 1.~3. (생략)
4.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 영업정지,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자문
5. (생략)

제13조(구성 및 위원 위촉 등) ① (생략)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생활폐기물 업무 담당 실·국·소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
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이루어진 12명의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1. -----4명
2. -----3
명
3.~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행
업체 평가를 위하여 고양시 생활폐기
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기능) (현행과 같음)

- 1.~3. (현행과 같음)
4. -----
계약해지-----

5. (현행과 같음)

제13조(구성 및 위원 위촉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제1부시장-----
-----호선(互選)-----.

[illegible]

1.~3. (생 략)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생 략)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사망·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

1.~3. (현행과 같음)

④ -----
-----<단서 삭제>

⑤ (현행과 같음)

1. -----사직하려는-----

2. -----
-----일으키는-----
3. -----
-----판단되는 경우
4. -----
-----적당하지 않다고-----

<삭 제>

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운영) ① (생략)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 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생략)

제1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의결 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과장 및 관련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과장 및 관련 평가대상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제15조(회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집하려고-----

-----알려야-----
-----그렇지 않
다.

③ -----
-----개 의(開議)-----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7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평가대상 업체에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
-----공무원 및 평
가대상-----
-----.

제18조(수당 등) -----

--- <단서 삭제>

다.

제4장 평가결과의 활용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 시 제20조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 등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를 포함한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 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삭 제>

제20조(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등) 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 해지 및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명령, 대행계약의 해지 및 영업정지 등 평가대상 업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 계약서 작성) -----

운반 서비스의 <u>지속적</u>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u>명시하여야</u> 한다.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u>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 포상, 대행구역 확대, 계약기간 연장을 부여할 수 있다.</u>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u>지속적인</u>----- -----<u>계약</u> <u>서에 분명하게 밝혀 적어야</u>-----.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 행업무의 <u>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포상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 다.</u> <삭제>
--	--

현행							개정안																																																									
[별표 2]							[별표 2]																																																									
평가결과의 활용 및 적용기준(제20조제1항 관련)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기준(제20조제1항 관련)																																																									
<평가결과의 등급 및 적용> <table> <tr> <th rowspan="2">등 급</th> <th rowspan="2">평가점수</th> <th colspan="5">적용기준</th> </tr> <tr> <th>1회</th> <th>2회</th> <th>3회</th> <th>4회</th> <th>5회</th> </tr> <tr> <td>탁 월</td> <td>90점 이상</td> <td colspan="5" rowspan="2">1위, 2위, 3위 까지 시장 표창</td> </tr> <tr> <td>우 수</td> <td>80점 이상 90점 미만</td> </tr> <tr> <td>보 통</td> <td>70점 이상 80점 미만</td> <td colspan="5">-</td> </tr> <tr> <td>미 흡</td> <td>60점 이상 70점 미만</td> <td rowspan="2">경고</td> <td rowspan="2">경고 (시정명령)</td> <td rowspan="2">대행구 역 축소</td> <td rowspan="2">대행구역 축소</td> <td rowspan="2">계약해지</td> </tr> <tr> <td>부 진</td> <td>60점 미만</td> </tr> </table>							등 급	평가점수	적용기준					1회	2회	3회	4회	5회	탁 월	90점 이상	1위, 2위, 3위 까지 시장 표창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경고	경고 (시정명령)	대행구 역 축소	대행구역 축소	계약해지	부 진	60점 미만	<table> <tr> <th rowspan="2">등 급</th> <th rowspan="2">평가점수</th> <th>조치사항</th> </tr> <tr> <th>대행기간 중</th> </tr> <tr> <td>탁 월</td> <td>90점 이상</td> <td rowspan="2">1위, 2위, 3위 시장 표창</td> </tr> <tr> <td>우 수</td> <td>80점 이상 90점 미만</td> </tr> <tr> <td>보 통</td> <td>70점 이상 80점 미만</td> <td>개선명령</td> </tr> <tr> <td>미 흡</td> <td>60점 이상 70점 미만</td> <td>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td> </tr> <tr> <td>부 진</td> <td>60점 미만</td> <td>영업정지</td> </tr> </table>			등 급	평가점수	조치사항	대행기간 중	탁 월	90점 이상	1위, 2위, 3위 시장 표창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개선명령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	부 진	60점 미만	영업정지
등 급	평가점수	적용기준																																																														
		1회	2회	3회	4회	5회																																																										
탁 월	90점 이상	1위, 2위, 3위 까지 시장 표창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경고	경고 (시정명령)	대행구 역 축소	대행구역 축소	계약해지																																																										
부 진	60점 미만																																																															
등 급	평가점수	조치사항																																																														
		대행기간 중																																																														
탁 월	90점 이상	1위, 2위, 3위 시장 표창																																																														
우 수	80점 이상 90점 미만																																																															
보 통	70점 이상 80점 미만	개선명령																																																														
미 흡	60점 이상 70점 미만	개선명령 또는 영업정지																																																														
부 진	60점 미만	영업정지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17년 이후 동결된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처리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반입 음폐수 수수료를 인상함(안 별표 1).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5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자원순환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5, 2층 자원순환과

- 전 화 : 자원순환과 청소시설팀(031-8075-2689)

- 팩 스 : 031-8075-4926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단체포함”을 “단체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재”를 “기록”으로, “다만,”을 “이 경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처리하고자”를 “처리하려고”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체결한자에 대하여는”을 “체결한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관외”를 “고양시 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배출하여야 한다.”를 각각 “배출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아니한 자에 대해서”를 “않은 자에게는”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제15조, 제16조, 제17조 규정의”를 “제15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으로, “용이한”을 “쉬운”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용이하고”를 “쉽고”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을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얻어”를 “받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설치하여야 한다.”를 “설치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하여야 한다.”를 “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익월”을 “다음 달”로, “통보하여야 한다.”를 “통보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주어서는 아니된다.”를 “주지말 것”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취할”을 “할”로,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처리하고자”를 “처리하려고”로, “차등하여”를 “차등을 두어”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재활용하고자”를 “재활용하려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건조하고자”를 “건조하려고”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를 “신고증명서를 발급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재활용하고자”를 “재활용하려고”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행하여야 한다.”를 “이행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다음해”를 “다음 해”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신고필증을”을 “신고증명서를”로,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것”으로 한다.

제17조제2호 중 “처리여부”를 “처리 여부”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아니한 자”를 각각 “않은 자”로 한다.

제19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의 제목 중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제14조제4항 관련)”를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 관련)”로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적용대상	수수료(원/톤)
음식물처리시설 반입 음폐수	70,280원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앞면) 중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의1제1항”을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자원순환과
입안자	과장 성명	자원순환과장 안명렬
	팀장 성명	청소시설팀장 김남훈
	담당자 성명·전화	박자영 031-8075-2687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② (생략) ③ 시장은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에 따른다. ⑤~⑦ (생략)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② (생략)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⑥ 시장은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처리업자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시장과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는 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필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단체를 포함한다----- ----- -----. ④ ----- ----- -----기록----- -----이 경우----- -----. ⑤~⑦ (현행과 같음)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그 밖의----- -----. ④ (현행과 같음) ⑤ -----처리하려고----- -----. ⑥ ----- ----- -----체결한 자에게----- -----. ⑦ ----- -----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자와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대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② (생 략)

③ (생 략)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안 니한 자에 대해서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생 략)

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16조, 제17조 규정의 규격봉투와 동일하게 제작·판매하되, 색상은 일반중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

-----고양시 외의
지역-----

-----.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배출할
것

2. -----

-----배출할 것

④ -----

-----않
은 자에게는-----
-----.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5
조,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쉬운-----
-----.

③ -----
-----쉽고-----

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해야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2조의2(그 밖의 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신청 등) ① 10세대 이상의 다세대·다가구, 빌라, 맨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민 거주목적으로 주방이 설치된 주택은 입주한 세대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당해 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용수거용기를 통하여 배출할 수 있다.

1. 공동배출에 동의한 세대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에 적합한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세대 입주자 중 대표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표 관리인은 전용수거용기의 관리, 납부필증의 확보 및 부착 등 관리, 공동배출 세대에 대한 수수료 산정·부과 등을 하여야 한다.
3. 대표 관리인 변경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 -----
-----생활폐기물배출자
에게 -----

-----대해서는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그 밖의 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신청 등) ① -----

-----받아-----

-----.

1. -----

-----설치할 것
2. -----

-----할 것
3. -----
-----다음 달-----

185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따른 건조에 따라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생 략)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생 략)

1.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시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

건조하려고-----

-----.

3. (현행과 같음)

제16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현행과 같음)

1. -----

-----신고증명서를 발급할 것
2. -----

-----제출할 것
3. -----

-----이행할 것
4. -----

-----다음 해
-----제출할 것
5. -----

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u>신고필증을</u> 첨부하여 시장에게 <u>제출하여야 한다</u>. 가.~라. (생 략)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생 략) 1. (생 략)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u>처리여부</u>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u>아니한 자</u>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④ (생 략)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 <u>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u> ② <u>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u>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u>신고증명서를</u>----- -----<u>제출할 것</u>----- 가.~라. (현행과 같음)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u>처리 여부</u>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 ----- ----- ----- -----<u>않은 자</u>----- ----- ----- ②~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	---

현행	개정안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9조제1항, 제14조제4항 관련) 4. 음폐수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처리하는 경우 <table><tr><th>적용대상</th><th>수수료(원/톤)</th></tr><tr><td>음식물처리시설 반입 음폐수</td><td>50,000원</td></tr></table>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table><tr><th rowspan="2">적용법</th><th rowspan="2">부과항목</th><th colspan="3">부과금액(만원)</th></tr><tr><th>1차 위반</th><th>2차 위반</th><th>3차 이상 위반</th></tr><tr><td rowspan="2">폐기물관리법</td><td>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td><td></td><td></td><td></td></tr><tr><td>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td><td>10</td><td>20</td><td>30</td></tr></table>	적용대상	수수료(원/톤)	음식물처리시설 반입 음폐수	50,000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관리법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10	20	30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 관련) 4. 음폐수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처리하는 경우 <table><tr><th>적용대상</th><th>수수료(원/톤)</th></tr><tr><td>음식물처리시설 반입 음폐수</td><td>70,280원</td></tr></table> <삭 제>	적용대상	수수료(원/톤)	음식물처리시설 반입 음폐수	70,280원
적용대상	수수료(원/톤)																									
음식물처리시설 반입 음폐수	50,000원																									
적용법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폐기물관리법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배출방법이나 분리보관방법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한 자(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																									
	1)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10	20	30																						
적용대상	수수료(원/톤)																									
음식물처리시설 반입 음폐수	70,280원																									

	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2)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	20	30	50	
	3)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0	70	100	
	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의2)				
	1)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감량 계획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2)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3)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처리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가)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50	70	100	
	나) 같은 건물 또는 일정 토지내에서 당해 건물에 입주한 자 또는 토지를 이용한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	50	70	100	
	4)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50	70	100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즉 시	
공동주택명				총세대수 배출세대수		세대 세대					
대표 자	성 명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주택(주거)형태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기타()									
신 청 (변경) 사 유	최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배출용기 설치장소				배출용기 용량							
수수료 납부방법		배출량에 비례한 납부 칩 사용 (대표 관리인이 총액 사용 고지 후 세대별 배분)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의1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1부. 2. 배출용기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										수 수 료	
										없음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										처리기간	
										즉 시	
공동주택명				총세대수 배출세대수		세대 세대					
대표 자	성 명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									
주택(주거)형태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기타()									
신 청 (변경) 사 유	최 초										
	변 경	당 초			변 경						
배출용기 설치장소				배출용기 용량							
수수료 납부방법		배출량에 비례한 납부 칩 사용 (대표 관리인이 총액 사용 고지 후 세대별 배분)									
「고양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계획 신청(변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 사용자 명부 1부. 2. 배출용기 설치장소 현장사진 1부.										수 수 료	
										없음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한양컨트리클럽)]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1-437호(2021. 12. 07.)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골프장(한양컨트리클럽)]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작물(안전망) 설치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198-11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한양컨트리클럽) 사업
- 명 칭 : 한양컨트리클럽(회원제 36홀) 조성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주)한양컨트리클럽 대표이사 최재영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643번길 164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5. 12. 31.

마.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변경]

- 토지이용계획 (회원제 골프장 36홀) [변경없음]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체육시설용지		677,806.00	감) 1,068.57	676,737.43	47.00	
건축시설 및 부대시설 용지		20,173.27	증) 7,351.93	27,525.20	1.91	
기반시설용지		89,688.98	증) 24,399.90	114,088.88	7.93	
녹지 용지	복원녹지	330,810.68	감) 23,533.36	307,277.32	21.32	
	원지형보전녹지	322,205.07	감) 7,746.90	314,458.17	21.84	
	소계	653,015.75	감) 31,280.26	621,735.49	43.16	
총 계		1,440,684.00	감) 597.00	1,440,087.00	100.00	

- 건축계획 (회원제 골프장 36홀) [변경없음]

구분	시설내용		건축연면적(㎡)			비고
	기 정	열 실	기 정	변 경	증 감	
클럽하우스(1동)	클럽하우스	-	4,692.46	9,595.94	증) 4,903.48	증축
티하우스(1동)	-	구1호, 구10호, 신1호, 신10호	19.33	-	감) 19.33	철거
그늘집(5동)	구6호, 구15호, 신1호, 신6호, 신14호	-	388.40	388.40	-	-
구내식당(1동)	-	-	431.50	-	감) 431.50	철거
휴게소(2동)	캐디휴게소	여직원휴게소 및 창고	457.28	329.28	감) 128.00	일부철거
관리시설(8동)	관리부 관리동, 관리부 사무실창고, 장비창고, 비료창고, 카트창고(창고시설)	식당창고, 관리부사무실, 화장실	3,595.06	1,978.19	감) 1,616.87	일부철거
물탱크(1동)	물탱크	-	225.00	225.00	-	-
정수장(1동)	정수장	-	54.91	-	감) 54.91	철거
수영장하우스(관리창고)(1동)	관리창고(수영장 하우스)	-	361.59	361.59	-	명칭변경
합 계			10,225.53	12,878.40	증) 2,652.87	

- 공작물(안전망)설치 [변경]

구 분	내 용	비 고
설치구간	회원제 구코스 5번홀	
설치내용	[신규철타] ◦ 연장 : 75m, ◦ 철타 : 6개소, ◦ 간격 : 15m, ◦ 높이 : 50m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변경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 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별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1	성사동	301-1	채	313,578	313,578	-	313,578	313,578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2	성사동	301-25	채	1,240	1,240	-	1,240	1,240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	
3	성사동	312-1	채	132,360	132,360	-	132,360	132,360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4	성사동	312-8	채	12,896	12,896	-	12,896	12,896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5	성사동	312-33	채	1,545	1,545	-	1,545	1,545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국(철도청)	지상권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6	성사동	315	채	3,286	3,286	-	3,286	3,286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7	성사동	317-11	임	1,059	1,059	-	908	908	-	경기도	-	-	-	
8	성사동	450-7	채	1,217	1,217	-	1,217	1,217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	-	
9	성사동	651-3	채	851	851	-	851	851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10	성사동	652-14	채	1,813	1,813	-	1,813	1,813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11	성사동	652-15	채	330	330	-	330	330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12	성사동	662-1	채	212	212	-	212	212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13	원당동	198	채	263,749	255,849	감) 7,900	256,401	255,849	감) 552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14	원당동	198-25	채	539	539	-	539	539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15	원당동	198-27	채	7,844	7,844	-	7,844	7,844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16	원당동	198-31	채	2,000	2,000	-	2,000	2,000	-	(사)서울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	
17	원당동	198-32	채	2,134	2,134	-	2,134	2,134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	
18	원당동	198-33	채	185	185	-	185	185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19	원당동	198-36	채	2,212	2,212	-	2,212	2,212	-	(사)서울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	
20	원당동	198-39	채	106	106	-	106	106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21	원당동	198-40	채	22,136	22,136	-	22,136	22,136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성명	주소	성명	권리관계	
22	원당동	198-42	채	411,681	411,681	-	411,681	411,681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 전력공사	구분지상권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23	원당동	198-51	채	169,463	169,463	-	169,463	169,463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국 (고양세무서)	근저당권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24	원당동	198-63	채	453	453	-	453	453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25	원당동	198-96	채	3,094	3,094	-	3,094	3,094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26	원당동	198-97	채	3,084	3,084	-	3,084	3,084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27	원당동	198-99	채	6,704	4,252	감) 2,452	4,297	4,252	감) 45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 전력공사	구분지상권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28	원당동	198-101	채	4,876	4,876	-	4,876	4,876	-	(사)서울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	-	
29	원당동	198-102	채	704	704	-	704	704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30	원당동	198-107	채	14,698	14,698	-	14,698	14,698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31	원당동	198-113	채	3,074	3,074	-	3,074	3,074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32	원당동	198-114	채	23,793	23,793	-	23,793	23,793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33	원당동	198-131	채	1,437	1,437	-	1,437	1,437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34	원당동	198-142	채	2,456	2,456	-	2,456	2,456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35	원당동	198-156	채	2,385	2,385	-	2,385	2,385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36	원당동	198-160	채	5,827	5,827	-	5,827	5,827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국(철도청)	지상권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37	원당동	198-172	채	2,803	2,803	-	2,803	2,803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국(철도청)	지상권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38	원당동	198-185	채	2,758	2,758	-	2,758	2,758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	-	
39	원당동	212-8	채	5,051	5,051	-	5,051	5,051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 전력공사	구분지상권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40	원당동	212-11	채	4,258	4,258	-	4,258	4,258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41	원당동	1064	채	413	413	-	413	413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42	원당동	1065	구	5,794	5,794	-	5,258	5,258	-	국토교통부	-	-	-	
43	원당동	1065-1	채	72	72	-	72	72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국(철도청)	지상권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44	원당동	1065-2	채	2,600	2,600	-	2,600	2,600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산업은행	근저당권	
45	원당동	1086	도	546	546	-	546	546	-	국토교통부	-	-	-	
46	원흥동	528-43	임	717	717	-	717	717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47	원흥동	528-44	채	1,031	1,031	-	1,031	1,031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48	원흥동	528-55	임	62	62	-	62	62	-	(주)한양 컨트리클럽	원당동 198-114	한국 산업은행	근저당권	
합 계				1,451,126.0	1,440,774.0	감) 10,352	1,440,684.0	1,440,087.0	감) 597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297호선 외 1개소]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3-8호(2023. 1. 10.)로 도시관리계획(경미한 사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일원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297호선 외 1개소(안터취락 내 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변경 작성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소로2-297호선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58-8번지 일원
- 대로2-11호선(일부구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292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소로2-297호선 외 1개소(안터취락 내 도로)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고양시장 (공사과)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라.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소로	2	297	8~13	국지 도로	838	-	신원동 119-28	신원동 293-10	일반 도로	-	경기도제2청고시 제2006-5096호 (06.07.03.)	
금회시행	소로	2	297	8~13	국지 도로	838	9,111	신원동 119-28	신원동 293-10	일반 도로	-		
결정	대로	2	11	30~46	주간선 도로	11,160	-	성사동 523-5	벽제동 산38-14	일반 도로	-	경기도고시 제440호 (74.12.16.)	
금회시행 (기정)	대로	2	11	3~4	주간선 도로	105	450	신원동 276-1	신원동 293-3	일반 도로	-		가감속차로 확장
금회시행 (변경)	대로	2	11	3~4	주간선 도로	105	453	신원동 276-1	신원동 293-3	일반 도로	-		가감속차로 확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3.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 토지조서
 ◦ 소로2-297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 성명		관계인 / 성명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68필지		9,442	9,111					
1	기정 신원동	119-28	도	311	311	고양시				
2	기정 신원동	255-19	답	73	73	고양시				
3	기정 신원동	255-6	도	16	16	고양시				
4	기정 신원동	255-21	답	15	15	고양시				
5	기정 신원동	255-16	답	138	138	고양시				
6	기정 신원동	255-20	도	6	6	고양시				
7	기정 신원동	255-17	도	56	56	고양시				
8	기정 신원동	255-18	도	10	10	고양시				
9	기정 신원동	256-9	도	56	56	고양시				
10	기정 신원동	256-7	대	1	1	고양시				
11	기정 신원동	257-5	도	373	373	국(국토교통부)				
12	기정 신원동	257-6	도	15	15	고양시				
13	기정 신원동	258-4	답	32	32	고양시				
14	기정 신원동	258-6	답	4	4	고양시				
15	기정 신원동	258-7	답	6	6	고양시				
16	기정 신원동	258-8	답	167	167	고양시				
17	기정 신원동	259-3	도	159	159	국(국토교통부)				
18	기정 신원동	259-2	도	96	96	고양시				
19	기정 신원동	260-34	답	312	312	고양시				
20	기정 신원동	260-42	답	49	49	고양시				
21	기정 신원동	260-35	대	63	44	고양시				
23	기정 신원동	260-45	대	126	100	고양시				
24	기정 신원동	260-9	도	127	127	고양시				
25	기정 신원동	260-37	도	92	92	고양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 성명		관계인 / 성명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6	기정	신원동	260-46	대	7	7	고양시			
27	기정	신원동	260-33	도	51	51	고양시			
28	기정	신원동	260-13	대	289	3	은유건설 주식회사	고양시 덕양구 솔밭1길32 (원흥동)		
29	기정	신원동	260-40	도	26	26	고양시			
30	기정	신원동	260-21	도	15	15	고양시			
31	기정	신원동	260-41	도	4	4	고양시			
32	기정	신원동	260-24	도	4	4	고양시			
33	기정	신원동	261-8	전	18	18	고양시			
34	기정	신원동	261-9	전	13	13	고양시			
35	기정	신원동	262-1	대	87	87	고양시			
36	기정	신원동	266-24	답	24	24	고양시			
37	기정	신원동	266-25	답	16	16	고양시			
38	기정	신원동	266-30	답	471	471	고양시			
39	기정	신원동	266-28	답	20	20	고양시			
40	기정	신원동	267-2	도	132	132	고양시			
41	기정	신원동	267-7	도	280	280	국(국토교통부)			
42	기정	신원동	267-9	도	102	102	고양시			
43	기정	신원동	272-8	답	3	3	고양시			
44	기정	신원동	275-10	답	181	181	고양시			
45	기정	신원동	275-11	답	112	112	고양시			
46	기정	신원동	293-4	전	32	32	고양시			
47	기정	신원동	293-5	전	173	173	고양시			
48	기정	신원동	293-10	전	148	148	고양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 성명		관계인 / 성명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49	기정	신원동	294-17	답	4	4	고양시			
50	기정	신원동	294-18	답	89	89	고양시			
51	기정	신원동	294-20	답	89	89	고양시			
52	기정	신원동	294-21	답	11	11	고양시			
53	기정	신원동	294-7	답	76	76	고양시			
54	기정	신원동	294-11	답	85	85	고양시			
55	기정	신원동	470-16	구	47	47	국(건설부)			
56	기정	신원동	470-21	구	255	255	국(건설부)			
57	기정	신원동	470-19	구	29	29	국(건설부)			
58	기정	신원동	473-17	도	320	320	고양시			
59	기정	신원동	473-13	도	45	45	고양시			
60	기정	신원동	473-18	도	543	543	고양시			
61	기정	신원동	473-15	도	25	25	고양시			
62	기정	신원동	475-11	도	63	63	고양시			
63	기정	신원동	475-6	도	700	700	고양시			
64	기정	신원동	475-17	도	1,976	1,976	고양시			
65	기정	신원동	475-3	도	76	76	고양시			
66	기정	신원동	475-4	도	8	8	고양시			
67	기정	신원동	489-7	도	300	300	고양시			
68	기정	신원동	489-6	천	28	28	고양시			
69	기정	신원동	산26-3	임	162	162	고양시			

◦ 대로2-11호선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 성명		관계인 / 성명		비고
				대장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소계	기정			7,550	450					
	변경			453	453					
1	기정	신원동	275-4	답	1,041	185	국(국토교통부)			
	변경	신원동	275-12	답	186	186	국(국토교통부)			
2	기정	신원동	275-5	답	1,168	131	국(국토교통부)			
	변경	신원동	275-14	답	131	131	국(국토교통부)			
3	기정	신원동	276-1	답	857	4	국(국토교통부)			
	변경	신원동	276-2	답	4	4	국(국토교통부)			
4	기정	신원동	292	답	86	17	국(국토교통부)			
	변경	신원동	292-1	답	17	17	국(국토교통부)			
5	기정	신원동	293-3	전	1,857	79	국(국토교통부)			
	변경	신원동	293-11	전	81	81	국(국토교통부)			
6	기정	신원동	473	도	2,541	34	국(국토교통부)			
	변경	신원동	473-21	도	34	34	국(국토교통부)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4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685-29 등 2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3. 3.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소	도 로 명 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156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685-29 (주교동)	2023-04-14	20090710	휴전선에 인접한 지역 특성 반영	
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119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공릉천로 459-16 (설문동)	2023-04-14	20090911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22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곳산길 142-18 (구산동)	2023-04-14	20090911	구산-법곶간 도로로 한 자락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210-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759번길 28-1 (관산동)	2023-04-14	20100126	통일로 시점에서 7590m에 위치한 도로	
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43-48, 302-2, 302-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원길 144 (설문동)	2023-04-14	20090824	문봉동과 파주 대원리에서 한 자락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302-2, 307-19, 307-21, 307-2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문원길 142 (설문동)	2023-04-14	20090824	문봉동과 파주 대원리에서 한 자락을 활용하여 도로명 부여	
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문동 149-26, 149-2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진천길46번길 22-59 (설문동)	2023-04-14	20100126	장진천길 시점에서 460m에 위치한 도로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66-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415번길 61-65 (성사동)	2023-04-14	20100126	흥도로 시점에서 4150m에 위치한 도로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604-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 55-31 (강매동)	2023-04-14	20090911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219-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큰골길 33-105 (오금동)	2023-04-14	20220516	고유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1421-72, 1421-78, 1421-7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531번길 90-91 (성석동)	2023-04-14	20100126	고봉로 시점에서 5310m에 위치한 도로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006-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민로35번길 31 (대자동)	2023-04-14	20100126	무민로 시점에서 350m에 위치한 도로	
1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향동 49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산향로 209-1 (산향동)	2023-04-14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08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안진7길 7 (지축동)	2023-04-14	20191101	고유지명 및 유래 등을 고려하여 선정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70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로67번길 14-123 (구산동)	2023-04-14	20100126	구산로 시점에서 670m에 위치한 도로	
1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곶동 1359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곶길 284-63 (법곶동)	2023-04-14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28, 923-14, 1128-8, 1128-16, 1128-1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5 (백석동)	2023-04-14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지번 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423-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73-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73-19	2023-04-13	민원신청(새 도로명주소 부여)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종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423-5,-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423-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73-17	2023-04-13	민원신청(기존 도로명주소 유지)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말실건을 고시일자	법정동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5	2023-04-07	건물 신축	2011-07-29	백석동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민로 35번길 31	2023-04-10	건물 신축	2011-07-29	대자동	

고양 풍동2지구 3블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110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규정에 따라 고양시 고시 제2022-354호(2022. 11. 11.)로 변경 고시되어 시행 중인 「고양 풍동2지구 3블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인가를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4. 14.

고 양 시 장

1. 도시개발사업의 명칭

- 고양 풍동2지구 3블럭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110번지 일원
- 면적 : 86,705㎡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풍동택지개발지구 주변의 낙후된 난개발지역 정비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 효율적 토지이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풍동2지구 3블럭 도시개발사업조합(조합장 김혜경)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14-15, 5층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
-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 제28조 내지 제49조 규정에 의한 환지방식

6.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가. 도시개발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고양 풍동2지구 3블럭 도시개발구역	일산동구 식사동 1110번지 일원	86,705	-	86,705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고양 풍동2지구 3블럭 지구단위계획구역	일산동구 식사동 1110번지 일원	86,705	-	86,705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86,705	-	86,705	100.0	-
주거지역		-	증)76,008	76,008	87.6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13,017	13,017	15.0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62,991	62,991	72.6	-
녹지지역		86,705	감)76,008	10,697	12.4	-
	자연녹지지역	86,705	감)76,008	10,697	12.4	-

○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①	일산동구 식사동 1110번지 일원	자연 녹지지역	제1종일반 주거지역	13,017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제3종일반 주거지역	62,991	•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용도지역 변경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라.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1) 도 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6	6,144 (1,827)	68,703 (23,675)	2	219	2,356	1	648 (471)	9,500 (5,199)	3	5,317 (948)	56,847 (16,120)
대로	2	5,236 (867)	55,853 (15,126)	-	-	-	-	-	-	2	5,236 (867)	55,853 (15,126)
중로	2	709 (552)	10,494 (6,193)	-	-	-	1	648 (471)	9,500 (5,199)	1	81	994
소로	2	219	2,356	2	219	2,356	-	-	-	-	-	-

※()은 구역내 도로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40	25~34	보조 간선도로	1,478 (774)	풍동 844-1	식사동 1131	일반 도로	백마로 지방도 310호선	고고 제142호 04-11-17	-
변경	대로	3	40	29~34	보조 간선도로	1,478 (774)	풍동 844-1	식사동 1131	일반 도로	백마로 지방도 310호선	고고 제142호 04-11-17	-
기정	대로	3	41	25~36 (27~35)	보조 간선도로	3,758 (93)	대로3-27	대로1-10	일반 도로	-	고고 제28호 05-04-13	-
기정	중로	2	122	15	집산도로	648 (471)	식사동 942-8 대로3-41	식사동 856-15 대로1-10	일반 도로	-	고고 제56호 01-06-22	-
변경	중로	2	122	15~21 (18~21)	집산도로	648 (471)	식사동 942-8 대로3-41	식사동 856-15 대로1-10	일반 도로	-	고고 제56호 01-06-22	-
신설	중로	3	1	12	국지도로	81	식사동 1101-1	식사동 1101-4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1	1	11	국지도로	135	식사동 1100-3	식사동 1100-3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1	2	10	특수도로	84	식사동 1116	식사동 1116	보행자 전용 도로	-	-	-

※()은 구역내 도로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변경	대로 3-40	대로 3-40	• 확폭 - B=25m~34m→29m~34m, L=774m	• 고일로 1개차로 확장 및 가감속차로, 버스베이 등 설치에 따른 도로확폭
변경	중로 2-122	중로 2-122	• 확폭 - B=15m→15~21m, L=471m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확폭
신설	-	중로 3-1	• 신설 - B=12m, L=81m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신설
신설	-	소로 1-1	• 신설 - B=11m, L=135m	•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도로신설
신설	-	소로 1-2	• 신설 - B=10m, L=84m	•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행자도로 신설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주차장	식사동 1100 일원	-	증) 958	958	-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주차장	• 신설 -면적 : 증) 958㎡	• 근린생활시설 내 노외주차수요를 수용하기 위한 주차장 신설

2) 공간시설

(1) 공 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공 원	소공원	식사동 1130일원	-	증)4,110	4,110	-	-
신설	②	공 원	어린이공원	식사동 1101일원	-	증)3,743	3,743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소공원	• 신설 -면적 : 증) 4,110㎡	•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신설
②	어린이공원	• 신설 -면적 : 증) 3,743㎡	• 어린이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신설

(2) 녹 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녹 지	경관녹지	식사동 1120일원	-	증)990	990	-	-
신설	②	녹 지	경관녹지	식사동 1110일원	-	증)1,066	1,066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결정(변경) 내용	결정(변경) 사유
①	경관녹지	• 신설 -면적 : 증) 990㎡	• 주택지의 쾌적성 확보를 위한 녹지 신설
②	경관녹지	• 신설 -면적 : 증) 1,066㎡	• 주택지의 쾌적성 확보를 위한 녹지 신설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공동주택용지

도면표시 번 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합 계		47,222	-	47,222	-
공동주택1	-	21,503	식사동 1122번지 일원	21,503	-
공동주택2	-	25,719	식사동 1110번지 일원	25,719	-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표시 번 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합 계		4,941	-	4,941	-
근린생활 시설	①	936	식사동 1100-3번지 일원	936	-
	②	4,005	식사동 1098번지 일원	4,005	-

○ 기반시설용지

도면표시 번 호	가구번호	면 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합 계		958	-	958	-
주차장	-	958	식사동 1098번지 일원	958	-

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형태·배치·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공동주택용지

도면표시 번 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동주택1 공동주택2	-	용도 (A)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상의 부대복리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은 불허하되,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은 허용	-
		건폐율		30% 이하	-
		용적률		240% 이하	-
		높 이		36층 이하	-
		배 치		주거동은 다양한 형태의 배치를 통해 양호한 조망 및 외부공간으로 열린 시야를 확보하도록 배치	-
		형 태		- 저층부 형태와 고층부 주거부분과 차별화된 디자인계획 권장 - 단조롭고 획일적인 형태는 지양하며, 다양한 주거동 계획 권장	-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건축한계선		- 대로 3-40호선변 : 8m - 중로 2-122호선 및 주변단지변 : 3m	-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표시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근린생활 시설	①,②		허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이외 용도	-
			용도 (B) 불허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 각 목의 용도 -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 제6호 종교시설 -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정신병원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가목, 학교(단, 유치원 제외) - 제11호 노유자시설(단,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제외) - 제12호 수련시설 중 나목, 자연권 수련시설 - 제14호 업무시설 - 제17호 공장 - 제19호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세차장 -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제23호 교정 및 군사시설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제25호 발전시설 - 제29호 야영장 시설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기타법령에 따라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
			건폐율	• 60% 이하	-
			용적률	• 180% 이하	-
			높 이	• 4층 이하	-
			배 치	• 건축물의 전면은 위계가 가장 큰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단, 보행자전용도로를 접한 필지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전면으로 할 수 있음)	-
			형 태	• 1층 전면 외벽면의 일부를 투시벽 또는 셔터 설치시 투시형 셔터 권장 • 담장설치 불허	-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건축한계선	• 대로 3-40호선, 3-41호선변 및 중로 2-122호선변 : 2m • 중로 3-1호선 및 소로 1-1호선변 : 1m	-

○ 기반시설용지

도면표시 번호	가구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주차장	-	용도 (P)	허용	•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주차전용 건축물 포함) ※단,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이외의 용도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에 의거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용도는 제외함 - 제1호 단독주택, 제2호 공동주택 -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 총포판매소, 차목 장의사, 더목 단란주점, 러목 안마시술소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 제6호 종교시설 중 나목 봉안당 - 제9호 의료시설 중 가목 정신병원, 나목 격리병원 - 제14호 업무시설 중 나목 2) 오피스텔 -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중 나목 세차장 - 제24호 방송통신시설	-
			불허	• 허용용도 외의 용도	-
		건폐율		• 80% 이하	-
		용적률		• 500% 이하	-
		높 이		• 8층 이하	-
		배 치		• 주변단지 및 시설에서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배치	-
		형 태		• 외벽재료는 건물 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조화를 이루도록 함	-
		색 채		•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조	-
		건축한계선		• 대로 3-40호선변 : 2m • 소로 1-1호선변 : 1m	-

사.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 번호	가구번호	계 획 내 용		비고
공동주택1 공동주택2	-	대지 내 공지	• 전면공지 조성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공지는 전면공지로 활용하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됨 (단, 차량의 진입을 막기위한 식재, 기타시설물 설치는 제외함)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참조	
		공공 보행통로	• 공동주택 1BL : 4m / 공동주택 2BL : 11m • 공공보행통로의 위치 및 조성방법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따름	
		기타사항	• 담장 - 담장은 개방감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함. 단, 보도와 단지 내 보행도로 사이에 담장은 설치할 수 없음	
근린생활 시설	①,②	대지 내 공지	• 전면공지 조성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공지는 전면공지로 활용하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됨 (단, 차량의 진입을 막기위한 식재, 기타시설물 설치는 제외함)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참조	
		기타사항	• 담장 - 담장은 개방감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불허	
주차장	-	대지 내 공지	• 전면공지 조성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공지는 전면공지로 활용하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됨 (단, 차량의 진입을 막기위한 식재, 기타시설물 설치는 제외함)	-
		차량진출입 불허구간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참조	
		기타사항	• 담장 - 담장은 개방감 확보 및 폐쇄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높이를 1.0m 이하로 하고,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등으로 조성함	

아.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1) 소공원

(1) 총괄조서

구 분	시 설 내 용	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		공작물 (기)	구성비 (%)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	4,110.0	-	-	43	100.0	-
도로 및 광장	도 로 • 광 장	667.0	-	-	-	16.2	-
조 경 시 설	-	-	-	-	-	-	-
휴 양 시 설	-	-	-	-	25	-	-
유 희 시 설	-	-	-	-	-	-	-
운 동 시 설	-	-	-	-	-	-	-
교 양 시 설	-	-	-	-	-	-	-
편 익 시 설	-	-	-	-	-	-	-
관 리 시 설	-	-	-	-	23	-	-
녹지 및 기타	녹지	3,443.0	-	-	-	83.8	-

(2) 시설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기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4,110.0	-	-	48	100.0%
시설합계			667.0	-	-	48	16.2%
도로 및 광장	소계		667.0	-	-	-	16.2%
	가	광장	62.0	-	-	-	-
	-	도로	605.0	-	-	-	-
휴양시설	소계		-	-	-	25	-
	①	등의자	-	-	-	20	-
	②	스윙벤치	-	-	-	3	-
	③					2	
관리시설	소계		-	-	-	23	-
	④	공원안내판	-	-	-	1	-
	⑤	공원등	-	-	-	18	-
	⑥	CCTV	-	-	-	4	-
녹지 및 기타	소계		3,443.0	-	-	-	83.8%
	-	녹지	3,443.0	-	-	-	83.8%

(3) 도로결정조서

구분	등급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소 계			-	-	206.5	605.0	-	-	-	-
신설	소로	3	1	2.5	36.1	119.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6	-
신설	소로	3	2	2.0	27.3	66.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6	-
신설	소로	3	3	5.0	5.5	30.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2	-
신설	소로	3	4	2.5	52.3	149.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6	-
신설	소로	3	5	2.0	16.2	34.0	진입로	공원경계	산책로6	-
신설	소로	3	6	3.0	69.1	207.0	연결로	소로1	소로1	-

2) 어린이공원

(1) 총괄조서

구 분	시 설 내 용	부 지 면 적 (㎡)	건 축 면 적 (㎡)		공작물 (기)	구성비 (%)	비 고
			바닥면적	연면적			
총 계	-	3,473.0	-	-	82	100.0	-
도로 및 광장	도 로 • 광 장	818.0	-	-	-	21.9	-
조 경 시 설	-	-	-	-	-	-	-
휴 양 시 설	-	203.0	-	-	26	5.4	-
유 희 시 설	-	733.0	-	-	12	19.6	-
운 동 시 설	-	146.0	-	-	7	3.9	-
교 양 시 설	-	-	-	-	-	-	-
편 익 시 설	-	55.0	34.0	34.0	1	1.5	-
관 리 시 설	-	-	-	-	36	-	-
녹지 및 기타	녹지	1,788.0	-	-	-	47.7	-

(2) 시설결정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합 계			3,743.0	34	34	82	100.0%
시설합계			1,955.0	34	34	82	52.3%
도로 및 광장	소계		818.0	-	-	-	21.9%
	가	광장	261.0	-	-	-	-
	-	도로	557.0	-	-	-	-
휴양시설	소계		203.0	-	-	26	5.4%
	나-1	쉼터1	175.0	-	-	-	-
	나-2	쉼터2	28.0	-	-	-	-
	①	파고라	-	-	-	2	-
	②	스윙벤치	-	-	-	2	-
	③	그물쉼터	-	-	-	2	-
	④	등의자	-	-	-	20	-

구 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유흥시설	소계		733.0	-	-	12	19.6%
	다	놀이터	733.0	-	-	-	-
	⑤	다인그네	-	-	-	1	-
	⑥	조합놀이대	-	-	-	1	-
	⑦	회전무대	-	-	-	1	-
	⑧	그물놀이	-	-	-	1	-
	⑨	시소	-	-	-	2	-
	⑩	모래놀이장	-	-	-	1	-
	⑪	모래테이블	-	-	-	1	-
	⑫	상점놀이대	-	-	-	1	-
	⑬	흔들놀이	-	-	-	3	-
운동시설	소계		146.0	-	-	7	3.9%
	라	체력단련장	146.0	-	-	-	-
	⑭	체력단련시설	-	-	-	7	-
편익시설	소계		55.0	34.0	34.0	1	1.5%
	마	화장실	55.0	-	-	-	-
	⑮	화장실	-	34.0	34.0	1	-
관리시설	소계		-	-	-	36	-
	⑯	공원안내판	-	-	-	1	-
	⑰	시설안내판	-	-	-	2	-
	⑱	공원등	-	-	-	28	-
	⑲	CCTV	-	-	-	5	-
녹지 및 기타	소계		1,788.0	-	-	-	47.7%
	-	녹지	1,788.0	-	-	-	47.7%

(3) 도로결정조서

구분	등급						기 능	기 점	종 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소 계			-	-	233.1	557.0	-	-	-	-
신설	소로	3	1	3.0	21.0	63.0	진입로	공원경계	공원경계	-
신설	소로	3	2	3.0	7.5	23.0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3	-
신설	소로	3	3	2.5	81.9	207.0	연결로	광장	소로1	-
신설	소로	3	4	2.0	17.8	36.0	연결로	소로3	소로6	-
신설	소로	3	5	2.0	3.8	19.0	연결로	놀이터	소로4	-
신설	소로	3	6	2.0	96.1	192.0	진입로	공원경계	광장	-
신설	소로	3	7	3.0	5.0	17.0	진입로	공원경계	소로6	-

7. 토지 명세서 : 별첨

8. 관계도서의 공람 방법 및 장소

가. 공람 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나. 공람 장소 : 고양시청 도시정비과 도시개발팀

9. 법 제19조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

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10. 기타사항

- 「도시개발법」 제9조 제5항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같은 법 제9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에 착수한 자는 시장에게 신고한 후 이를 계속할 수 있음
- 「도시개발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거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11. 고양 풍동2지구 3블럭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고시

- 고양 풍동2지구 3블럭 도시개발구역 지형도면(S=1:1,500) : 덧붙임(계재생략)
-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청 도시계획정책관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별첨] 고양 풍동2지구 3블럭 도시개발사업 토지명세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합 계				103,162	86,705			
1	풍동	175-1	도	96	1	고양시		
2	풍동	180-1	도	15	15	고양시		
3	풍동	180-4	도	692	48	고양시		
4	풍동	675	도	2,114	253	(국)국토교통부		
5	풍동	845-5	도	204	188	(국)농림축산식품부		
6	풍동	847-1	구	120	61	(국)농림축산식품부		
7	풍동	848-1	답	397	134	고양시		
8	풍동	849-1	답	60	4	고양시		
9	식사동	906-4	도	26	26	김성렬	고양군 일산읍 풍리 152	
10	식사동	908-4	도	36	36	김성렬	고양군 일산읍 풍리 152	
11	식사동	942-3	도	36	5	장태순	고양군 원당면 식사리 542	
						김대훈	고양군 중면 풍리 312	
12	식사동	943-2	도	21,977	10,431	고양시		
13	식사동	977-12	도	2,007	121	(국)국토교통부		
14	식사동	991-14	구	30	30	(국)국토교통부		
15	식사동	1098	전	2,223	2,223	김경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울로 6번길 10(풍동)	
16	식사동	1098-1	전	401	401	김경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151	
17	식사동	1098-2	답	159	159	고양시		
18	식사동	1099	창	660	660	김종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울로 6번길 10(풍동)	
19	식사동	1099-2	전	2,189	2,189	김종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울로 6번길 10(풍동)	
20	식사동	1100	창	1,000	1,000	김정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196번길 18(풍동)	
21	식사동	1100-3	전	1,887	1,887	김정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196번길 18(풍동)	
22	식사동	1101	답	1,843	1,843	유영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498 위시티일산자이2단지 210-1702	
23	식사동	1101-1	창	496	496	홍영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87	
24	식사동	1101-4	답	2,182	2,182	홍영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287	
						황병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로 7, 506동 701호(식사동, 위시티일산블루밍5단지)	
25	식사동	1103	전	2,244	2,244	조성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135 백송마을604-1104	
26	식사동	1104	답	2,152	2,152	이종국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울로 195, 901동1204호(풍동, 숲속마을)	
27	식사동	1104-1	답	1,438	1,438	곽순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044	
28	식사동	1105	답	1,128	1,128	곽순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044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면입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29	식사동	1106	답	1,497	1,497	정창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79, 316동 1002호(식사동, 위시티일산블루밍3단지)	
30	식사동	1107	답	884	884	김향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195 901동1104호(풍동, 숲속마을)	
						김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206동1704호(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2단지)	
						김혜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3로 110, 106동 2204호(식사동, 일산자이2차아파트)	
						김기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2로 171, 301호(풍동)	
31	식사동	1108	답	3,796	3,796	김향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195 901동1104호(풍동, 숲속마을)	
						김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206동1704호(식사동, 위시티일산자이2단지)	
						김혜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3로 110, 106동 2204호(식사동, 일산자이2차아파트)	
						김기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2로 171, 301호(풍동)	
32	식사동	1108-2	답	88	88	고양시		
33	식사동	1109-1	답	201	201	고양시		
34	식사동	1110	답	4,254	4,254	장옥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87, 506동902호(풍동, 숲속마을)	
						김현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1로 87, 506동902호(풍동, 숲속마을)	
35	식사동	1110-1	답	53	53	고양시		
36	식사동	1111	답	1,360	1,360	권준호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81, 710호(대화동, 하이투모로)	
37	식사동	1111-1	답	78	78	고양시		
38	식사동	1111-2	전	1,132	1,132	이명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로 808, 302동904호(대화동, 장성마을)	
39	식사동	1112	전	2,654	2,654	양재인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22, 517호(정발산동, 아이스페이스)	
						장지원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15, 805동1601호(야당동, 휴먼시아한빛마을)	
						장경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22, 517호(정발산동, 아이스페이스)	
40	식사동	1112-1	답	105	105	고양시		
41	식사동	1113	전	2,710	2,710	최미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로 36, 401동1401호(일산동, 후곡마을)	
						최덕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약산길 16-12	
42	식사동	1113-1	답	9	9	고양시		
43	식사동	1114	전	1,186	1,186	최동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44-25, 108동1005호(풍동, 성원아파트)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면적 (㎡)	면적면적 (㎡)	소 유 자		비고
						성 명	주 소	
44	식사동	1115	답	1,377	1,377	김승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859-2	
45	식사동	1116	답	2,735	2,735	김승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859-2	
46	식사동	1117	창	733	733	주식회사 정현엔지니어링	경기도 파주시 문화로 65, 301호 다-01호(금촌동, 정원빌딩)	
47	식사동	1117-1	전	3,574	3,574	김희태	고양군 일산읍 풍리 197	
48	식사동	1119	전	933	933	심병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474, 은행마을307-101	
49	식사동	1120	전	2,284	2,284	심병철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 307동101호(식사동,은행마을)	
50	식사동	1121	구	458	458	(국)농림축산식품부		
51	식사동	1122	답	1,469	1,469	김향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로 195 901동1104호(풍동,숲속마을)	
						김혜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46, 206동1704호(식사동,위시티일산자이2단지)	
						김혜정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3로 110, 106동 2204호(식사동, 일산자이2차아파트)	
						김기훈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숲속마을2로 171, 301호(풍동)	
52	식사동	1123	전	3,438	3,438	이구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은행마을로 100, 304동502호(식사동,은행마을)	
						정창용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4로 79, 316동1002호(식사동, 위시티일산블루밍3단지)	
53	식사동	1125	창	366	366	김기택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266	
54	식사동	1125-1	전	2,529	2,529	김기택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266	
55	식사동	1126	전	3,164	3,164	김수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128	
56	식사동	1128	대	441	441	식사풍동지구지역주택 조합5단지추진위원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일로 132, 2층(풍동)	
57	식사동	1128-1	도	7	7	정윤성	경기도 파주시 송화로 13, 128동 202호 (아동동,팜스프링아파트)	
58	식사동	1128-2	전	2,368	2,368	김수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128	
59	식사동	1129	구	1,359	1,359	(국)농림축산식품부		
60	식사동	1129-1	구	22	22	(국)농림축산식품부		
61	식사동	1129-2	구	1,336	1,336	(국)농림축산식품부		
62	식사동	1130	전	1,287	1,287	김수식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128	
63	식사동	1131	답	1,779	1,779	임용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16번길 21, 103호(토당동)	
64	식사동	1133	도	765	765	(국)농림축산식품부		
65	식사동	1133-1	도	18	18	(국)농림축산식품부		
66	식사동	1133-2	도	2,435	2,435	(국)농림축산식품부		
67	식사동	1133-3	도	466	466	(국)농림축산식품부		